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01-10

2024 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 중소벤처기업부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 금융 지원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8
1-2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18
1-3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24
1-4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30
1-5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35
1-6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39
1-7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41
1-8 • 정책자금 이차보전 …… 46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2-1 • 신용보증기금 …… 50
2-2 • 기술보증기금 …… 55
2-3 • 지역신용보증재단 …… 58
2-4 • 매출채권보험 …… 62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 3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 창업성장기술개발(R&D) ····· 70
3-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74
3-3 • 산학연Collabo R&D ····· 78
3-4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 82

제 4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4-1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88
4-2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 91
4-3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 94

제 5 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 선도형 제조혁신 ····· 98
5-2 • 디지털협업공장 ····· 102
5-3 •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 105
5-4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 108
5-5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 111
5-6 •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 113
5-7 •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 115
5-8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 118
5-9 •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

업 ····· 121
5-10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 124
5-11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128
5-12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144

제3부 | 인력 지원

제 6 장

인력 양성

6-1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156
6-2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 159
6-3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161
6-4 • 연수사업 ····· 164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7-1 • 내일채움공제 ····· 168
7-2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171
7-3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174
7-4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1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7-5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181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7-6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18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7-7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187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7-8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190

제4부 | 판로 지원

제 8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8-1 •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196
8-2 • 직접생산확인제도 ····· 200
8-3 • 계약이행능력심사 ····· 203
8-4 • 적격조합 확인제도 ····· 206
8-5 •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208
8-6 • 공공구매론 ····· 210
8-7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213

제 9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18
9-2 • 성능인증제도 ····· 223
9-3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226

제 10 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 판로진출지원 ····· 232
10-2 •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236
10-3 •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 238
10-4 • 동행축제 ····· 241

제5부 | 수출 지원

제 11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1-1 • 수출바우처 ····· 246
11-2 • 수출컨소시엄 ····· 251
11-3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 255
11-4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258
11-5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62
11-6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266
11-7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269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 12 장

여성기업 지원

12-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276
12-2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 281
12-3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 286
12-4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288
12-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292
12-6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 295
12-7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운영 ····· 297
12-8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299
12-9 •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302

12-10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305

제 13 장

장애인기업 육성

13-1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308
13-2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312
13-3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316
13-4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 319
13-5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323
13-6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326
13-7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 329
13-8 •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 333
13-9 •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337
13-10 • MAS 컨설팅 및 등록 ····· 340
13-11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 343
13-12 • 공공구매제도 운영 ····· 346
13-13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349

제 14 장

지역기업 지원

14-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 354
14-2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358
14-3 • 지역특화산업육성 ····· 361
14-4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 365
14-5 •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 368

제2편 |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 예비창업패키지 ····· 378
1-2 • 초기창업패키지 ····· 382
1-3 • 창업도약패키지 ····· 384
1-4 • 재도전성공패키지 ····· 388
1-5 • 창업중심대학 ····· 392
1-6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395
1-7 • 팁스(TIPS) ····· 399
1-8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404
1-9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408
1-10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411
1-11 • K-스타트업센터(KSC) ····· 414
1-12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417
1-13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420
1-14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 423
1-15 • 청년창업사관학교 ····· 426
1-16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430
1-17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 433
1-18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 436
1-19 • 아기유니콘육성사업 ····· 438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2-1 • 청소년 비즈쿨 ····· 442
2-2 • 창업에듀 ····· 445
2-3 • 도전! K-스타트업 ····· 447
2-4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 450
2-5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452
2-6 •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455
2-7 • 창업지원포털(K-Startup) ····· 458

제 3 장

창업지원 인프라

3-1 • 창조경제혁신센터 ····· 462
3-2 • 창업존 운영 ····· 464
3-3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466
3-4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469
3-5 • 메이커 활성화 지원 ····· 472
3-6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476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 4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 재도약지원자금 ····· 482
4-2 • 진로제시 컨설팅 ····· 487
4-3 • 회생 컨설팅 ····· 490
4-4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493
4-5 • 구조혁신지원사업 ····· 497

제3편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 소상공인

제 1 장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1-1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506
1-2 • 상권정보시스템 ····· 509
1-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511
1-4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515
1-5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520
1-6 • 로컬브랜드 창출 ····· 523

제 2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528
2-2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531
2-3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534
2-4 • 소공인지원센터 설치 · 운영 ····· 538
2-5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541
2-6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544
2-7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 547
2-8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550
2-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552
2-10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555
2-11 •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 558

제 3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 희망리턴패키지 ····· 562
3-2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566
3-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569

제 4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 일반경영안정자금 ····· 574
4-2 • 특별경영안정자금 ····· 577
4-3 • 성장기반자금 ····· 580

제2부 | 전통시장

제 5 장

전통시장 지원

5-1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86
5-2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589
5-3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593
5-4 • 온누리상품권 발행 ····· 597
5-5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600
5-6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 604
5-7 • 전통시장 화재공제 ····· 609
5-8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 612
5-9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615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 6 장

보증지원 제도

6-1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622
6-2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626
6-3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630
6-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633
6-5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637
6-6 •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640
6-7 • 외식업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 644
6-8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 647
6-9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650

제4편 | 공통사항

제1부 | 기 타

제 1 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1-1 • 중소기업 옴부즈만 ····· 660

제 2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2-1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664

제 3 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3-1 • 거래 공정화 ····· 668
3-2 • 성과공유제 ····· 672
3-3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 675
3-4 • 상생결제제도 ····· 679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제 4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4-1 •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 684
4-2 • 이노비즈 확인제도 ····· 687
4-3 • 메인비즈 확인제도 ····· 690
4-4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693
4-5 • 기술자료 임치제도 ····· 697
4-6 • 벤처기업 확인제도 ····· 699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704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707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 편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 금융 지원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3부 ▸ 인력 지원
제4부 ▸ 판로 지원
제5부 ▸ 수출 지원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중소기업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 소상공인
제2부 ▸ 전통시장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 기타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 1

금융 지원

제 1 장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제 2 장 ▸ 신용보증 지원

함께 알아보는 금융 지원

Q 2022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2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3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4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6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1-8 정책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사업개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5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주력산업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

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 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별 대출 금리에서 0.3%p 차감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대기업, 자금조달 취약계층, 성과창출 기업 등에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정책우대)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및 여성기업 0.1%p
  - (투자연계) 투자조건부융자 방식 지원기업 0.2%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고용증가+수출향상+매출향상' 등 대출건당 최대 3개 유형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 가능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긴급경영(재해) 등)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수출향상)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매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년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한 기업
  * 4개년 재무제표 없는 경우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제외

융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
- (대리대출)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융자

  * 대리대출 취급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 투자(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 융자 지원, 후속투자 유치 시 대출금 조기상환 조건의 융자방식

융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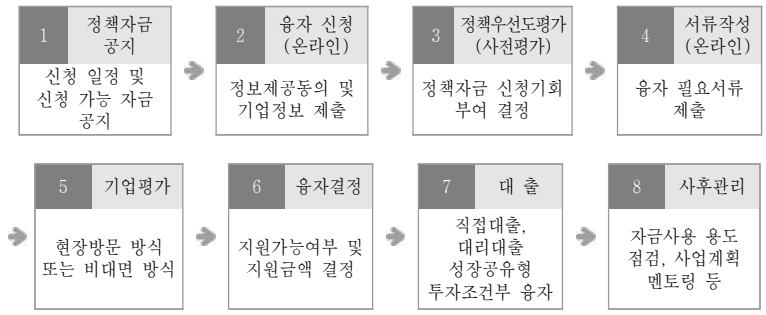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

①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자가진단 허위작성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혁신성장, 첫거래)분야, 고용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서류작성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융자 지원 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4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융자제한기업

①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추가 예외사항은 '24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조)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⑫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신규지원 예외)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 4조 4,632억원, 이차보전 4,943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9,9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17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7,2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5,318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1,37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알림광장-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추 가) ■ (추 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삭 제)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

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투자조건부융자) 정책자금 대출금리(변동)에서 우대금리 0.2%p 적용

대출기간

●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조건부융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방식으로 지원 불가

● (투자조건부융자) 연간 1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불가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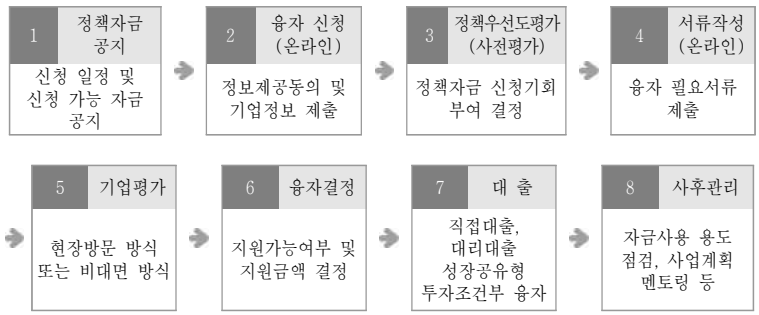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조 9,958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 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 : 신규로 발행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전환, 스케일업(Scale-up)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추 가)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中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민간은행 ESG금융(대출)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中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

급을 적용

융자방식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증권화하여 민간 매각 및 중진공이 인수하고 회사채 인수 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 조달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융자공고 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스케일업금융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구분이 없음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스케일업금융)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적용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스케일업 금융 발행 별도 공고 참조 (kosmes.or.kr)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스케일업금융
  - 일반사채(SB) : 5년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 주식연계형사채(BW)
    * (BW) 5년 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 (스케일업금융) 120억원 이내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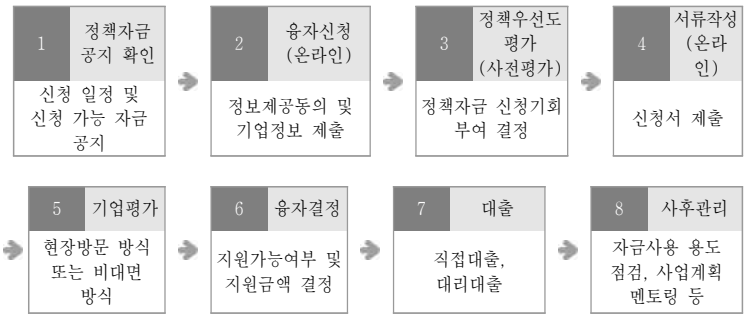

- 스케일업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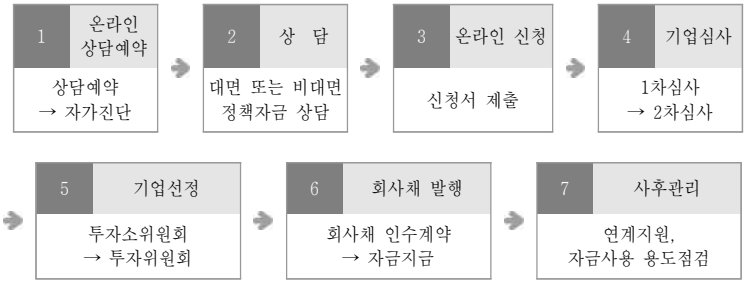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1조 4,587억원, 이차보전 2,663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개요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요건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추 가) ■ (추 가)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 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 피해 ('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참고15는 홈페이지 내 융자공고 참고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방식

- 직접대출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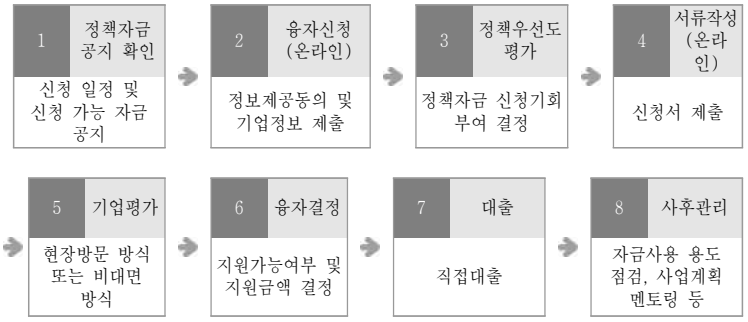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1,5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금액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3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 기타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
- 지원조건 : 직접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
- 우대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이상 기업 우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174억원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고정금리 선택가능
- (이차보전) 최대 3%p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이차보전)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간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2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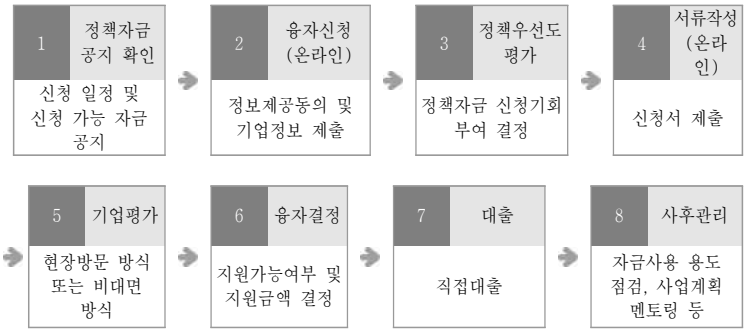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알림광장-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개요

지역 신산업 분야 공급망을 구성하는 대·중견기업 등(발주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발주기업과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조건 : (융자방식) 직접대출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한도)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신청제외 대상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대·중견기업 등(발주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통해 상환
- 지원금액 : 1,00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3월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최근 2개년 회계정보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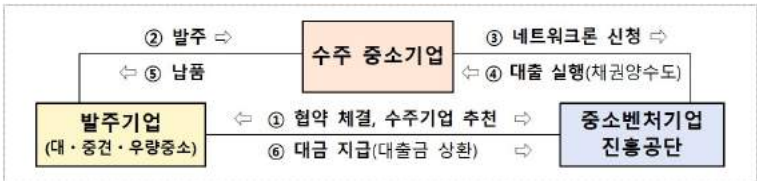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팩토링 절차② 참고)

- 지원법위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내에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외 대상

<공통사유>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기업은 신청 제외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불건전업, 주점업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및 다음에 해당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판매기업>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내용

-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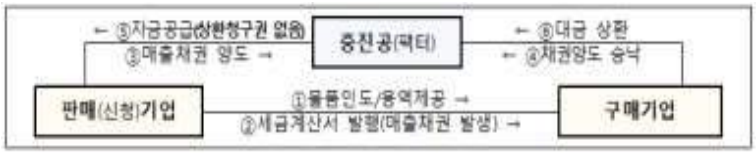

- 지원금액 : 375억원
- 지원한도 : (판매기업)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연간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제조업 1/2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 할인율 : 연 4% 내외

* 구매기업의 신용위험,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기간 : 90일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중 선택 가능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3개년 결산재무제표, 24개월 이상 회계정보
- 선정평가 : 비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내용 : 신용위험평가,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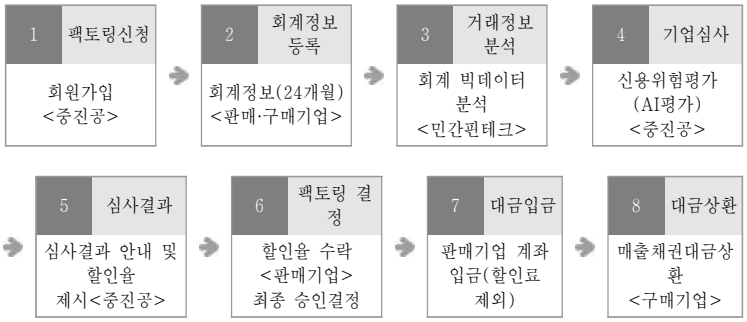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6, taekyung11@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2-3211-5605, wj389@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 (경로) 중진공 홈페이지-지원사업-매출채권팩토링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매출채권팩토링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구매기업의 경우 수수료, 금융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없으며, 판매기업에게 할인율(매출채권 인수 시 연 4% 내외)만큼 차감 후 대금이 지급됩니다.

Q 기존 신용대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 금융여신이 아닌 매출채권의 양수도방식이며, 차입금으로 미반영 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 및 판매기업의 상환책임 없이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개요

산업구조 변화 대응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민간금융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취급기관	▪ KDB, IBK,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지원대상

-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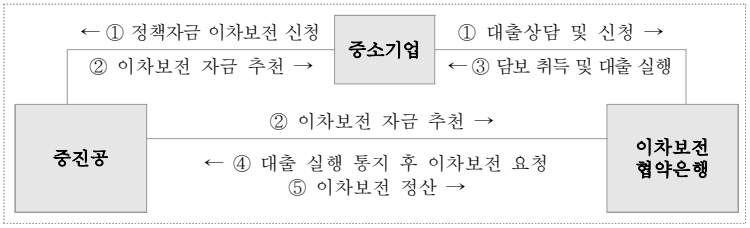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2-1 신용보증기금
2-2 기술보증기금
2-3 지역신용보증재단
2-4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사업개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보증한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가능	(보증한도) 50~200억원까지 가능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 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 요 내 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제2금융 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자금종류	보증한도
▪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150억원
▪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61.8조원으로 운용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Q&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시설자금 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공동 프로젝트 보증	·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 단위 보증 지원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 문화 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 타	·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

기술보증기금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하여 기술보증 지원
- 지원금액 : '24년 총 보증잔액 28.8조원으로 운용 예정
  (유동화회사보증 0.7조원 포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 (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59, (이메일) 2505@kibo.or.kr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3.7조원)
  * 햇살론사업자 별도(공급 0.3조원, 보증잔액 0.5조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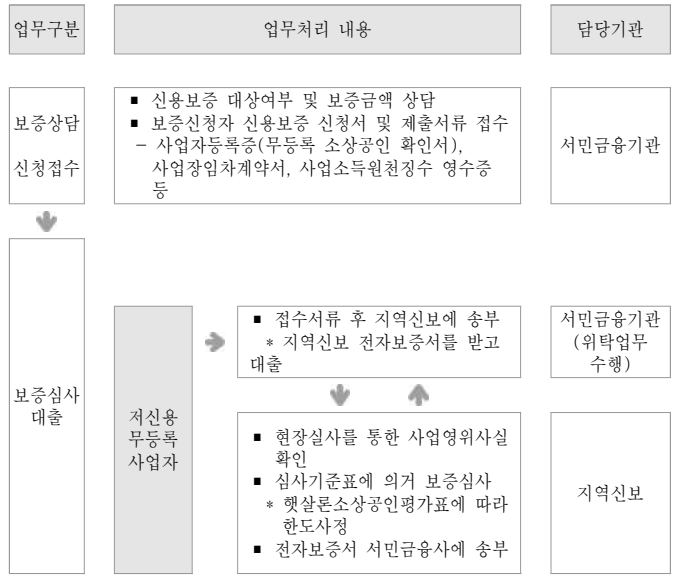

매출채권보험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구 분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
- 구매자의 폐업, 해산, 결제지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 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보험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실시간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보험계약자 및 보험구매자(어음 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보험 인수금액, 보험구매자 확정, 보험 인수 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관련 자료

  *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가입절차	세부내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발급

지원규모

- 보험인수 21.2조원으로 운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32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전화) 053-430-4397, 053-430-4396
- 기타 : 신용보증기금(1588-6565)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용어 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제 2 부

기술개발 지원

제 3 장 ▸ 기술개발자금 지원
제 4 장 ▸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제 5 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3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창업성장기술개발(R&D)
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3 산학연Collabo R&D
3-4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여성참여활성화, 서비스 R&D 등 지원 ▸(전략형) 초격차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등 지원 ▸(TIPS)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지원을 위해 특화형 TIPS 신설·지원	▸(디딤돌) 다양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원분야 및 지원물량 확대 ▸(전략형) 신규 지원 없음(旣 선정과제에 대한 계속사업비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세부 지원조건은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세부 우대기준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디딤돌) 중기부 R&D 첫 수행기업 등 다양한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TIPS)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TIPS	일반형	최대 2년, 5억원		
	특화형(딥테크 팁스)	최대 3년, 15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총 2,665개(디딤돌 1,765개 / TIPS 900개)

● 지원금액 : 총 2,485억원(디딤돌 1,284억원 / TIPS 1,201억원)

＊ 지원규모 및 금액은 신규 기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1월, (하반기) 4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

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창업기업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세부 추진절차는 개별 공고에서 확인)

①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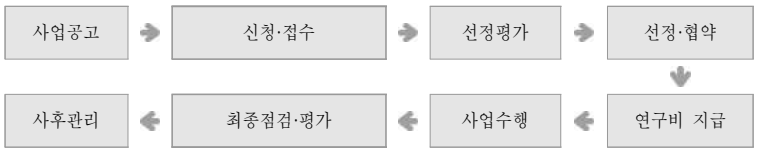

②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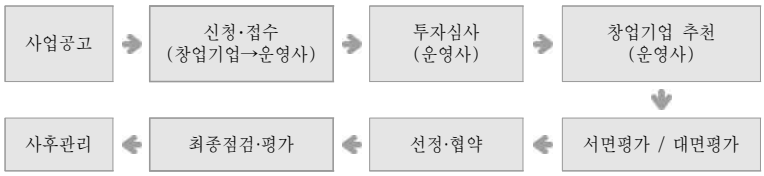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67, (이메일) neoyume@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디딤돌) 스타트업사업실 :
(전화) 044-300-0555, (이메일) 331@tipa.or.kr

– (TIPS) 민간투자협력실 :
(전화) 02-2280-0421, (이메일) kyj@tipa.or.kr

● 기타 : (사업)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시스템) IRIS콜센터(국번없이 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경로)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수정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과 동일
지원내용	회계구분에 따라 6개 내역사업으로 구분 * (일반)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특)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일반/소특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지원 * (일반)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 일반회계 내 소부장 분야 추가 지원(소특홉수)
지원조건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80%적용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매출액 50~100억 원 이상, 직·간접 수출액 100~500만 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역량을 확

보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10억 원 이상 유치실적을 보유하면서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일반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65%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75%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신청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혁신역량 단계별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422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920억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459억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1,062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1,801억원(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세부 추진절차는 개별 공고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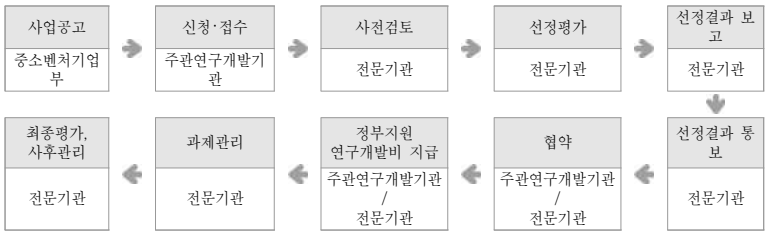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69, (이메일) susie26@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전화) 044-300-0535, 0541~0547, (이메일) 311@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세부 지원 내용이 세부사업별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

산학연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협력 R&D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 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조건
  - 1단계(예비연구)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제외 대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

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단계별 지원(1단계 완료 후 2단계 수행)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구분		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2단계 (사업화R&D)	2년, 2.6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2단계 (사업화R&D)	2년, 2.6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 1단계(예비연구)는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성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가능

● 지원규모 : 305개 과제(신규 47개, 계속 258개)

구분			과제수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신규	22
	2단계 (사업화R&D)	신규	10
		계속·종료	181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신규	9
	2단계 (사업화R&D)	신규	6
		계속·종료	77

- 지원금액 : 27,143백만원(신규 3,038백만원, 계속 24,105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 선정평가
  - 1단계(예비연구) : 서면평가 →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2단계(사업화R&D) :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추진절차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73, bpmt94@korea.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044-300-0846, jaeyun@tipa.or.kr)
- 산학연 매칭기관 및 부서명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6, 2618@kibo.or.kr)
  -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044-410-3322, mun@auri.go.kr)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시스템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1단계(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를 종료한 후, 별도로 2단계(사업화 R&D)의 선정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과제만 2단계(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예비연구) 신청 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2단계(사업화 R&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 공급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3대 핵심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 연도	지원 한도	'24년 신규과제 지원 여부
첨단 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최대 36억 이내	-
유연 생산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內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기술 확보			-
현장 적용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24~'26	최대 4.5억 이내	O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주관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지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한도 및 규모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현장적용	최대 3년('24~'26), 4.5억원 이내	195개	75% 이내	품목지정

- 지원금액 : 119.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공장등록증명서(수요기업), 정보이용동의서 및 재무재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면평가→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 및 기술품목서 상에서 제시한 기술내용·분야와의 부합성, 현장수요 반영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서류, 발표)	→	협약체결
중기부		전문·주관기관		전문·주관기관		전문·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 044-204-725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전화) 044-300-0973,0975,0976, (이메일) smartrnd@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2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보기

※ '24년 신규 모집분야는 전년도('22년) 공고와 기술품목 및 분야가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24년 공고 확인 필수

Q&A

Q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어야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정 품목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반드시 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수요기업은 반드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동 사업은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현장 내 실증까지 추진이 필요하므로 제조현장을 보유한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Q 기술품목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술품목서는 세부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2월 중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용어 설명

품목지정 : 제시된 기술품목의 품목개념, 지원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4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4-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4-2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4-3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 창출 등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지원대상

- 국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신청제외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 (신규 구축) 선별된 기업에 대해 핵심 BM·서비스 창출 및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DX솔루션 구축 지원(총예산 90억원)
  - 연간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6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핵심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한 상위 10% 내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 지원(총예산 15억원)
  - 연간 1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24년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24.3월 공고시 지원 내용 확인 필수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3월
- 신청방법 :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b-servic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현장실사,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현장실사를 통한 요건검토 및 대상과제 추천
  * 현장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필요시)/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협약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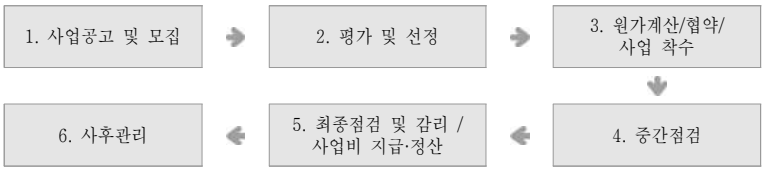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
  (전화) 044-204-7252, (이메일) nayeon0120@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략기술사업실) :
  (전화) 044-300-0613, (이메일) aroma12@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알림마당>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5년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아래의 가와 나항까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중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나)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제품 중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지원내용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평가절차	(평가명) 기술혁신성 평가	(평가명)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기업 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③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③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

- 지원조건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세부 자격기준은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신청제품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제품과 중기부 R&D과제 간 연계성이 없는 경우(중기R&D수행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및 지침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시범구매제도에 선정된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

– 공공구매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 지원규모 : 4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제품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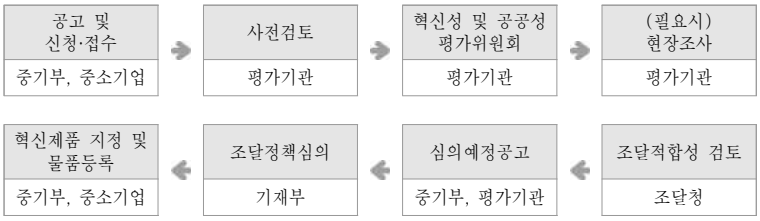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70, (이메일) ckj5766@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 :
  (전화) 044-300-0715, (이메일) innopro@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이전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제8조제3항(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을 적용하여 결격사항이 없는 기업
-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기업 부도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재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당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공급·수요기술의 고도화, 기술거래를 위한 중개수수료 및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기술수요정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수요 작성 시 전문가 참여를 지원(200건 내외)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텍스트 중심의 기술정보를 스마트화하여 공급기술 정보의 직관성을 제고(400건 내외)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60건 내외)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지원 및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20건 내외)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사업화 통합집중지원(40개사 내외)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사업화기획 지원사업	이전기술의 기술사업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사업화 기획지원사업에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이전기술의 상용화 비용 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식재산(IP) 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융통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 지원규모 : 총 680개 내외(기반조성사업 680개 내외, 통합지원사업 40개 내외)
- 지원금액 : 총 2,68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 신청방법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온라인 신청·접수,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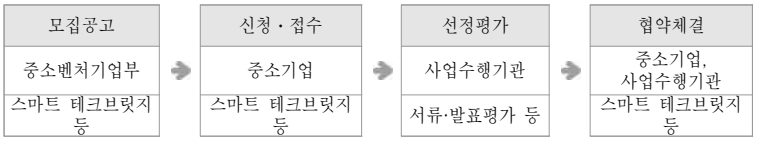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화) 044-204-7784, (이메일) rhkstmd03@korea.kr
- 기술보증기금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
-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https://tb.kibo.or.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소통과 공유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제 5 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선도형 제조혁신
5-2 디지털협업공장
5-3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5-4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5-6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5-7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5-8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5-9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5-10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5-1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5-1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선도형 제조혁신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table>
<tr><th>구분</th><th>'23년</th><th>'24년</th></tr>
<tr><td>지원 사업 및 물량</td><td>
<table>
<tr><th>내역</th><th>지원기업(개)</th></tr>
<tr><td>정부일반형</td><td>310</td></tr>
<tr><td>탄소중립형</td><td>15</td></tr>
<tr><td>부처협업형</td><td>35</td></tr>
<tr><td>투자연계형</td><td>18</td></tr>
<tr><td>공급망연계형</td><td>50</td></tr>
<tr><td>상생형(기초)</td><td>200</td></tr>
<tr><td>상생형(고도화1)</td><td>130</td></tr>
<tr><td>K-스마트등대공장</td><td>25</td></tr>
<tr><td>디지털클러스터</td><td>계속 3컨소(18)</td></tr>
<tr><td>소 계</td><td>801</td></tr>
</table>
</td><td>
<table>
<tr><th>내역</th><th>지원기업(개)</th></tr>
<tr><td>자율형공장</td><td>20</td></tr>
<tr><td>정부일반형</td><td>500</td></tr>
<tr><td>탄소중립형</td><td>15</td></tr>
<tr><td>부처협업형</td><td>35</td></tr>
<tr><td>상생형(고도화1)</td><td>200</td></tr>
<tr><td>K-스마트등대공장</td><td>15</td></tr>
<tr><td>디지털클러스터</td><td>신규6컨소(30)계속3컨소(23)</td></tr>
<tr><td>소 계</td><td>838</td></tr>
</table>
</td></tr>
</table>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우대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지원 세부내용

유형	지원내용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 과제 수
선도형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335
	정부일반형(지역특화프로젝트)	165
	자율형공장(2년)	20
	대중소상생형	200
	부처협업형	35
	탄소중립형	15
	디지털협업공장	6컨소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023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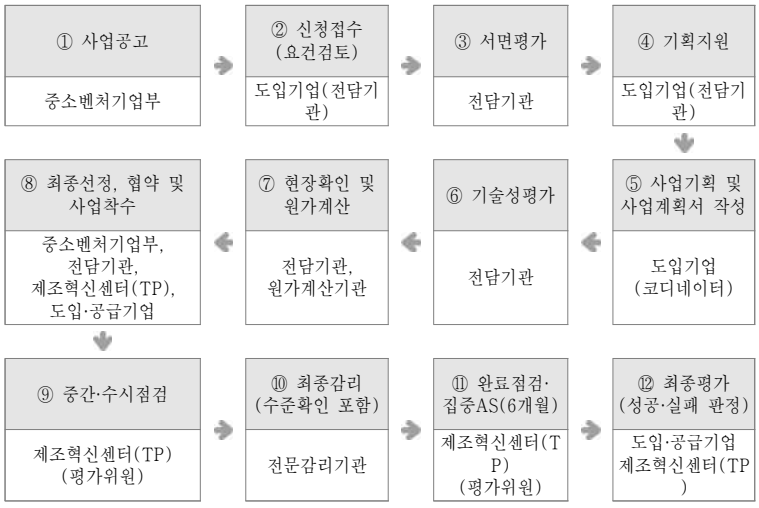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24년도 통합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통합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디지털협업공장

사업개요

대표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장·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협업 시스템 연

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고도화(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024년 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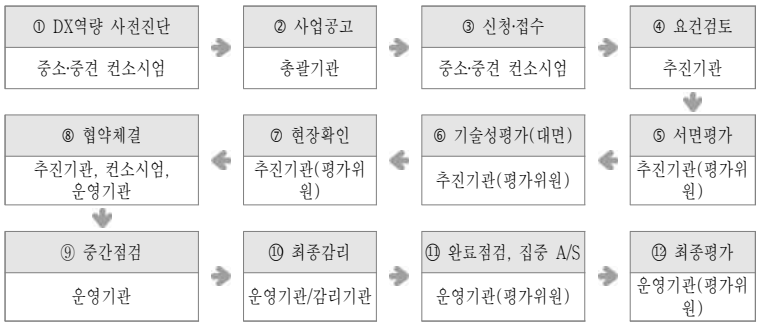

문의처

①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통합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사업개요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 (구축)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연 3억원, 최대 2년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최대)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AI·디지털트윈 적용)	6억원(2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획지원 → 기술성(현장심층)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현장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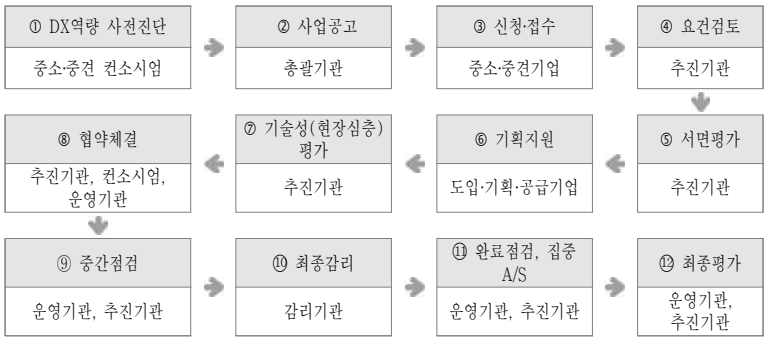

문의처

①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통합 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개요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교육' 등 후속 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우선 지원 제조 분야

①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②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③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제조 분야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안전검사까지 일괄지원

< 지원내용 상세 >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 공급기업(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사업비 심의
-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확약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 지원

지원규모

- 예산 250억원(10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 053-210-9552~4(www.kiria.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개요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

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미참여)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추가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르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 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기업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기초단계 이상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중인 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해 신속한 부품교체, 수리·복구 등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관리, H/W 및 S/W 개선,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지원

지원조건

- 지원한도 및 비율 : 최대 2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비율
AS지원	부품교체, 수리·복구 등	최대 20백만원, 최대 6개월 이내	50% 이내
	H/W, S/W업그레이드 지원		
	S/W개선, 사용법 전수 등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4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텍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5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내역

문의처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획·구축지도 컨설팅 및 지역 기업의 제조혁신 관련 컨설팅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및 지역 DX희망기업
지원내용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등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지도 (지원규모) 1,000개사, 37.8억원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사업기획 및 구축지도 지원 (지원규모) 1,000개사, 37.8억원
신청·접수	(공고) '23. 3. 31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공고) 별도 공고 없음 (접수방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접수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선정된 기업
- 지원조건 : 구축지도 비용 중 90%(기업당 최대 3.4백만원)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방·음식점
- ▸최근 3년이내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및 지역 DX 희망기업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정부지원형 고도화, 지자체형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에 구축사업계획서 기획, 구축지도, 제조노하우 전수 등 지원
  - (지역 DX 희망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전략수립, 기술애로 해결 등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000개사
- 지원금액 : 37.8억원(정부보조금 9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별도공고 없이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완료 기업 대상 신청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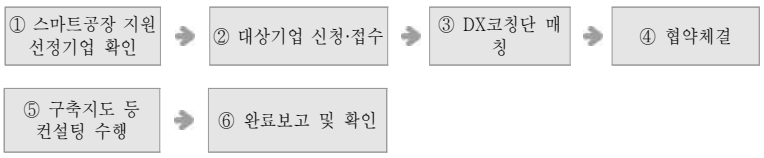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486, (이메일) periomint@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4, (이메일) hmp@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개요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도록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지원조건 : 역량진단비용 80~100%

구분	기본역량진단	심화역량진단
지원조건	진단비용 100% 전액지원 (기업당 최대 80만원)	진단비용 80% 지원 (기업당 최대 152만원)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최근 3년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23년 공급기업 역량진단(기본·심화) 후, 6개월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을 위한 자가 역량진단 및 전문역량진단(기본·심화) 지원
  - (자가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제공
  - (기본역량진단) 개발된 역량진단모델을 기반으로 전문진단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단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역량진단) 단계별 기본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규모 : 공급기업 300개
- 지원금액 : 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역량진단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공고문 확인 요망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화가능성, 컨소시엄 역량,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전략 등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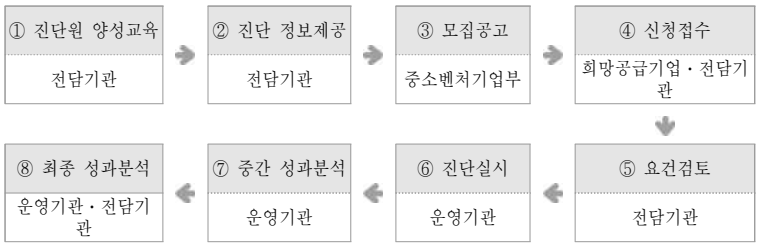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471, (이메일) tpgud637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1, (이메일) passion@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IT서비스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컨소시엄(IT서비스기업 중 중소기업 1개 이상, 컨소시엄 내 클라우드사업자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정부지원, 최대 8억원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방·음식점
- ▸최근 3년이내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업종별 대표 공정에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관련 종합 솔루션(MES, ERP, PLM 등) 개발 지원

– (종합솔루션 개발) 제조기업 업종별 대표 공정 및 주요제춤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며, 인공지능(AI) 등이 포함된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SaaS), 패키지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 (솔루션 실증) 종합솔루션이 목표로하는 업종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실증
- (솔루션 출시) 개발·실증 완료한 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에 구독형으로 출시

-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
- 지원금액 : 8.3억원(정부출연금 50%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화가능성, 컨소시엄 역량,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전략 등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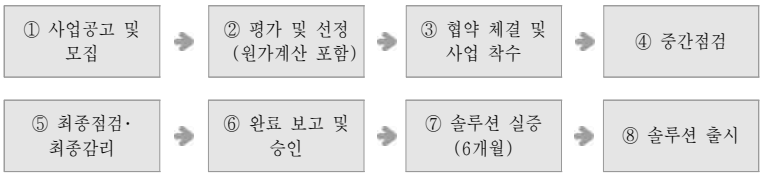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471, (이메일) tpgud637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4, (이메일) hmp@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사업개요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100대 선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술유출탈취피해기업(검창, 경찰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별도공고(기술보호울타리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중소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온라인)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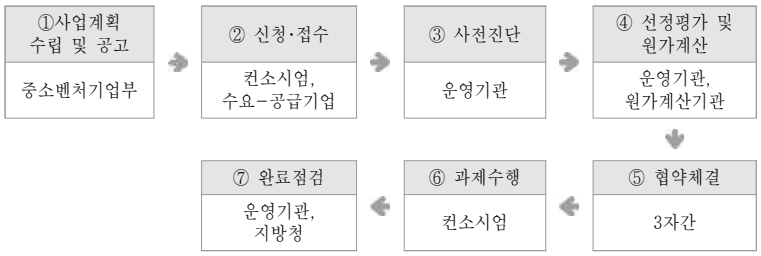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 관련 홈페이지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장비 미보유 시에 임대(비용 월9~13만원) 및 구매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기업 당 PC용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내 PC 중요 자료의 암호화로 인한 불법 유출 및 피해 방지 지원, 기업 당 PC용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

(monitor@kaits-info.or.kr)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전화) 02-3489-7050, (이메일) monitor@kaits-info.or.kr
- 관련 홈페이지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개요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3일, 무료)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 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 정책 수립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 유출 사전예방
- 인적보호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 서약·
  경업금지약정 계약 작성 지원

②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6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전화) 02-368-8918, (이메일) consulting@win-win.or.kr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전문가 현장자문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법무지원단

사업개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최대 60시간 이내(최대 6개월)	▸최대 60시간 이내(최대 3개월)

* 단, 산업보안·정보보호·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일반 자문은 최대 10시간 이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 투자기업
▸ 휴·폐업기업

지원내용

●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 컨설팅

● (피해구제)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인정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비용 지원

* 별도 지원심사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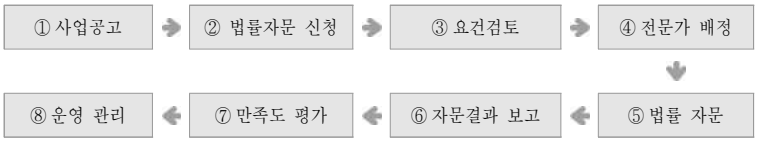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법무지원단'을 통한 신청방법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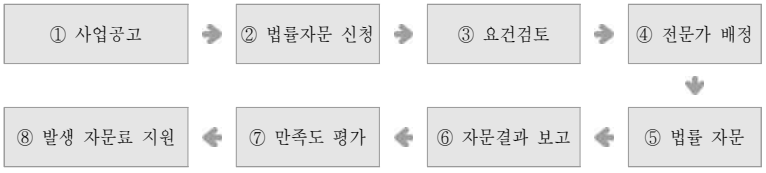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전화)02-368-8706, (이메일) law@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법무와 관련한 모든내용을 지원하나요?

A 아니오. 해당 지원사업은 소송대리를 제외한 법률사항을 지원합니다. 기술탈취 예방 측면에서는 계약서 검토, 보안 규정수립 등이 해당되며 기술탈취 대응 측면에서는 대응 상담 및 컨설팅, 유관부처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탈취 예방은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을 선행하여야 하며, 현장자문 사업의 결과에 법무지원단을 통한 추가 기술유출 사전예방 자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침해구제팀'을 통한 법률소송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침해구제팀'은 기술분쟁 관련 소송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피해기업의 소송을 진행하며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침해구제팀' 소송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서는 ①행정조사를 통한 기술탈취 피해 입증, ②행정조사 종료 6개월 이내 신청, ③지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기술보호지원반

사업개요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초동지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피해 구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일(무료)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상시 접수(support@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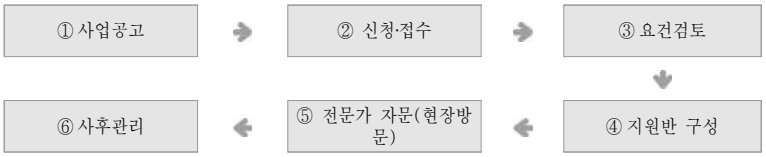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1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술보호울타리 내 온라인 접수 기능 신설
비용제도	신청인(중소기업)만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조정 성립 시 피신청기업(중소기업)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최대 5백만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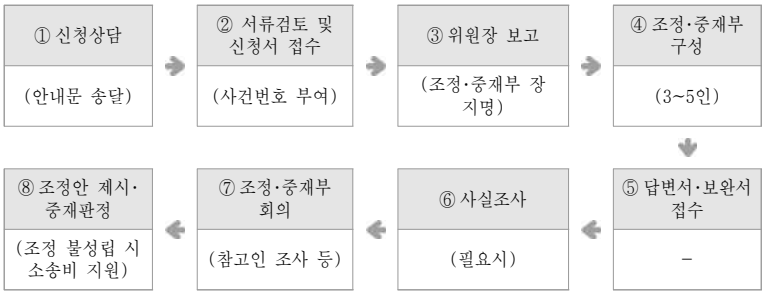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69, solomon@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5.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 기기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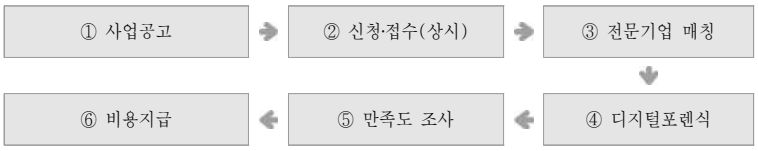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전화) 02-368-8714, (이메일) forensic@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명: 기술유출 증거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무료지원)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디지털포렌식이란 무엇인가요?

A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기기가 많아 사업에서 정하는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듯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분석을 의뢰하는 기기가 지원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사업의 지원내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사업에서 최대 지원하는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기술자료 임치

지원 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 부여

- 임치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수수료 1/2 감면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 지점(전국)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서류

-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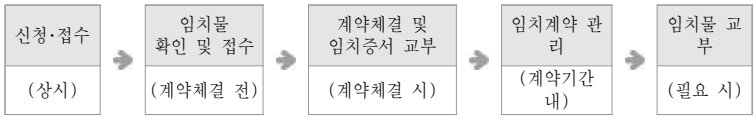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 제도소개

② 테크세이프 → 기술지킴이(기술임치) → 기술지킴이 안내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 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신청·접수

- (신청대상)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부가세 포함)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부여(임치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테크세이프 → 증거지킴이(TTRS) → 증거지킴이 안내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기술보호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확산하고, 기술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및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 지원
-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최대3건, 90만원 한도) ③ 법무지원단(최대 60시간 무료) ④ 기술보호 정책보험(보험료 70% 지원에 3% 추가지원)	⑤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ltp300@win-win.or.kr)('24년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국내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 (일부 해외국가로 지원범위 확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등 특정된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어 등과 같은 사업의 지원과 무관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 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보장기간	• 1년 또는 3년 중 선택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 선택)
보험효력	• 가입 즉시	•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보상금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중 선택 (해외 1억원)	
보험료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율 30%) * 산업별·매출별·보상금액별 상이	
보험료 할증·할인	• 최근 5년간 기술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 • 3년 계약 시 연 요율의 250% 적용	

- 지원금액 : 보험료의 70% 정부 지원
  *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율에 최대 10% 추가 지원
- 보장하지 않는 내용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과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상불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지원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서류, 보험료 추가지원 관련 서류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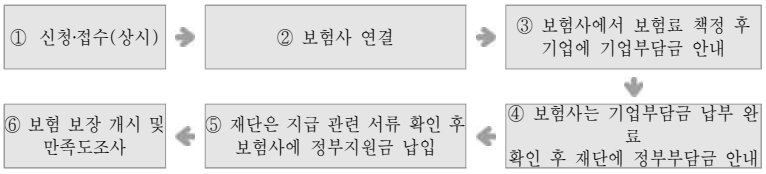
① 신청·접수(상시)
② 보험사 연결
③ 보험사에서 보험료 책정 후 기업에 기업부담금 안내
④ 보험사는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 확인 후 재단에 정부부담금 안내
⑤ 재단은 지급 관련 서류 확인 후 보험사에 정부지원금 납입
⑥ 보험 보장 개시 및 만족도조사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전화) 02-368-8714, (이메일) insurance@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보험사는 어느 곳인가요?

A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약관과 보험료가 다른가요?

A 5개 보험사 모두 동일한 약관과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보험사 약관 확인과 간이 보험료 산출은 현대해상(https://imet.kr/tp/)을 통하여 확인가능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

Q 신청기업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신청기업의 선호도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개 보험사 모두 약관과 보장 내용이 같습니다.

Q 특허 심판원 분쟁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A 특허 심판원 분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원에 접수된 소송만 보상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24년 별도공고 예정
- 우대사항 : 창업기업, 혁신기업 등
  * 세부 우대사항 및 우대 지원비율은 '24년 별도공고 예정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사행시설 운영 등 부적합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기술관련 외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중기부, 운영기관, 전문기관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추진체계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지원대상 모집, 선정심의위 운영 등)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문기관(손해액 산정, 최종심의위 운영 등)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적용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cod@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관)를 통한 지원 적합성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손해액 산정의 시급성 및 타당성, 해당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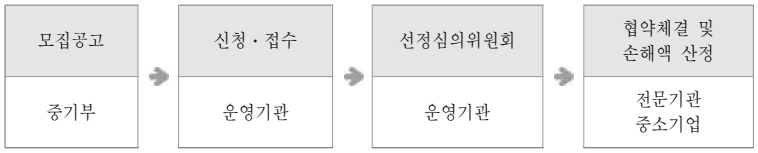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

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15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72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제3부

인력 지원

제 6 장 ▸ 인력 양성
제 7 장 ▸ 인력유입 촉진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6 장

인력 양성

6-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2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6-3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6-4 연수사업

6-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변동없음
지원내용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등 지원	변동없음
지원규모	특성화고 198개교	특성화고 185개교
지원예산	30,750백만원	27,675백만원
특화교육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신기술 중점지원학교	'23특화교육 + 지역특화산업(신규)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변동없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우대사항 :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신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반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신청제외 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1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맞춤반(취업/산학)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2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현장체험,현장실습 활동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3 특성화 마인드 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85개교
- 지원금액 : 한 학교당 평균 1.2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성과평가(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특성화 목표 및 계획, 학교장 리더십, 인프라,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연계 역량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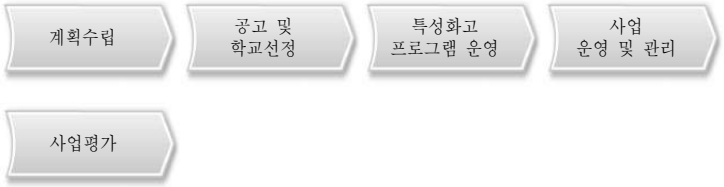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2, 9862, 9863, 9865, 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검색)특성화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사업개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이 가능한 사업단(컨소시엄)

  - (전문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5인 이상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최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대 상	지 원 내 용
참여학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 지원규모 : 15개 사업단, 22개 직업계고
- 지원금액 : '23년 예산 48억원(기업 직접 지원 금액은 없음)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신청제외 대상

-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이내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기준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학과별 세부 학사일정 상이)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학과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계약학과 3자협약서, 입학원서·추천서 등(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
- 선정평가 : 원서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합격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co.kr)에 현재 설치된 계약학과별 누리집 기재되어 있음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 (홈페이지) 상세보기

연수사업

사업개요

- 전국 6개 중소기업 전문연수원을 운영하여 교육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재양성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과 디지털 제조기술, 뿌리·생산기술, 경영·품질 분야 등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등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등 대상 연수비 할인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경영분야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기업현장 맞춤연수,이러닝·마이크로러닝 등 이러닝연수 운영
  - (직무역량향상연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경영·품질 분야 연수 등

– (정책연수) 중소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이차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		경영일반·직무,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 정신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뿌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직무·정책·맞춤연수) http://sbti.kosmes.or.kr

- (이러닝연수) https://cyber.kosmes.or.kr
- (마이크로러닝) https://micro.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수비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추진절차 : 연간 연수과정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및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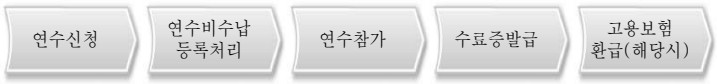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벤처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2
- 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2
- 중소벤처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6
- 중소벤처기업충청연수원(천안) : 041-559-922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 연수사업처(온라인연수) : 031-490-1288
- 연수사업처(K-기업가정신 연수) : 055-751-9812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7-1 내일채움공제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7-4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7-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7-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7-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7-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7-1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조건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적립 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 30%)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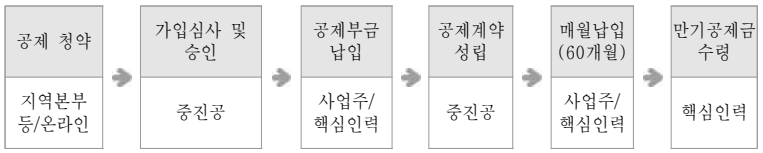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7-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뒤 이어서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3년을 더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조건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찬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 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공제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	공제계약 성립	→	매월납입 (36개월)	→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가 2년간 공제금 적립 후 만기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개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서면평가 시 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 산학협력 마일리지 보유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에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제외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시 혜택 제공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병역지정업체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50% 감면
  - 민간채용플랫폼 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 지원규모 : 총 3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5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등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30점) → 심의위원회(총 70점 이상 기업)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서면평가
  - (정성평가) 인재육성 노력, 복지인프라 수준, 교육훈련 수준 등을 현장방문하여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화) 044-204-7448, (이메일) codms9745@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전화) 055-751-9829, 9825, (이메일) bsmss@kosme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전략품목(디지털전환, 미래혁신선도) 해당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지원내용	기준연봉의 50% 지원	신진 연구인력의 기준연봉을 학위·연차별 500만원 상향조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50% 이상 선정, 여성 연구인력을 30% 이상 선정,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신규 165명, 계속 389명
- 지원금액 : 총 12,462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연구수행
1~2월		2~3월		4~5월		6월		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877-204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

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 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전략품목(디지털전환, 미래혁신선도) 해당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50% 이상 선정,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지원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신규 102명, 계속 166명
- 지원금액 : 총 10,293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연구수행
1~2월		2~3월		4~5월		6월		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877-204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 가점 부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등 가점 부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표기업(신설) 등 우대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 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연구개발 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수행
1~2월	상시	상시	상시	최대 3년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877-204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연의 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수요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지원수요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단, '24년 상반기부터 기업과 연구인력 간 매칭을 웹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

Q 파견인력이 파견 중 공공연으로 중도 복귀하는 경우, 파견지원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파견기업은 동사업에 참여(기업지원계약 체결)한 경우,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개요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

※ 연구인력혁신센터 신청자격 범위

- (지역혁신기관) 지역의 산업육성 및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법, 특례법,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설립된 지역혁신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협·단체) 민법, 공익공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업 신청은 기관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수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4년(2+2년),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4개 센터
- 지원금액 : 총 4,83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수행
1월	1월	2월	3월	최대 4년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2, 085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877-204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 하나요?

A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Q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지원받는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기획연구, 예비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지원 활동) 운영 및 센터 관리·운영 비 등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제외 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지원내용

-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에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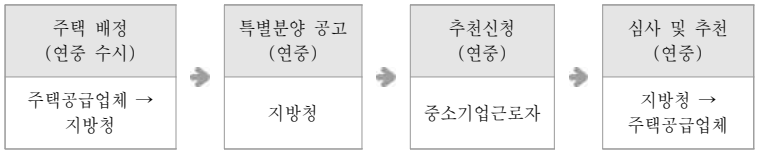

확인·추천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정책) : 044-204-7792
-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 및 접수)

참고사항

- 해당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sanhakin)에서 확인 가능

제 4 부

판로 지원

제 8 장 ▸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제 9 장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10장 ▸ 마케팅, 홍보 지원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8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8-2 직접생산확인제도
8-3 계약이행능력심사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8-6 공공구매론
8-7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8-1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개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22.1.1~'24.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대상제품 지정 현황('22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31개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제외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제출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절차

제품별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신청	→	공청회, 예고, 검토·지정추천	→	추천서, 공청회 등 지정타당성 검토
중소기업, 단체 (전문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전문위원회)
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7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신청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심사·평가 주요내용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제출서류

-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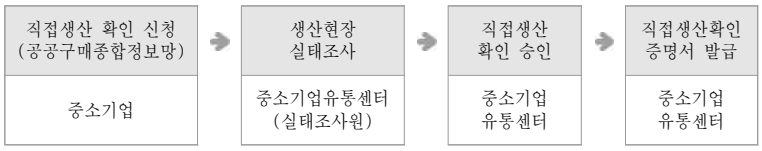

지원규모

- ('21) 32,396개사, ('22) 37,561개사, ('23년) 38,239개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3
-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운영팀: 02-6678-9661~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Q&A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수수료 수납 이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고시금액(2.2억원)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2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7년 이내)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4호 中 1종]
-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별지 제5호]
-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6호] 확인
  - ▸(납품실적)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별표4]에 따른 관계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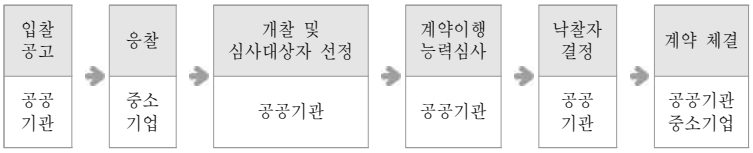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Q **[신인도 평가기준]** 나. 영세기업(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고시금액 미만 구매입찰의 경우, 점수를 받는지요?

A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Q **[신인도 평가기준]** 라.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의 C.혁신형 중소기업 및 D.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인정되는지요?

A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합니다.
즉, C.혁신형 중소기업 1.5점만 인정됩니다.
※ 계약이행성실도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경우,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

적격조합 확인제도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받은 중소기업자)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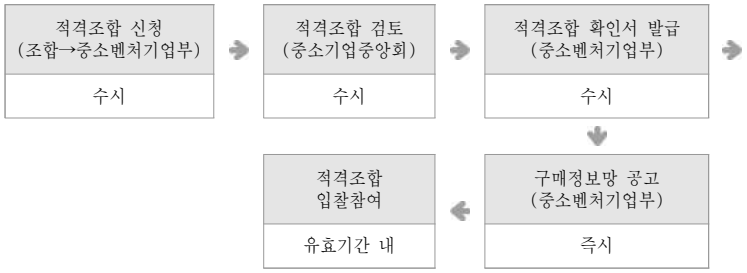

지원규모

- 적격조합('23) 125개 조합, 189개 제품(세부품명기준, 중복제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구매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
- (추천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소액수의계약추천→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
- (추천방식) 선착순 또는 3배수 무작위 추첨 방식 중 수요기관 담당자 택1
  - ▸(2천만원 미만) 2개 이상 업체 추천
  - ▸(2천만원 이상) 5개 이상 업체 추천(비조합원사 반드시 1개 이상 추천)
- (구매방식)

공공기관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협동조합
추천요청	• 정보검색 • 추천신청	• 적격심사 • 추천	• 수의공고 • 견적접수 • 계약	계약결과 입력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 (상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구매론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
- 중소기업이 계약된 제품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 공공구매론 취급 시중은행(6개) : 기업·산업·하나·부산·경남·광주은행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

  * 기업은행은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 기준이 다름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 해당은행 거래실적, 신용도 등에 따라 부득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유의사항

- ▸ 공공구매론 대출 시, 공공기관의 계약 대금은 은행이 지정한 별도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
- ▸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 공공구매론은 정부 예산지원 없는 민간은행의 대출상품으로서, 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 등은 취급은행이 결정함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회원가입 > 메인화면 중소기업 메뉴 중 “공공구매론 신청” 클릭
- 필수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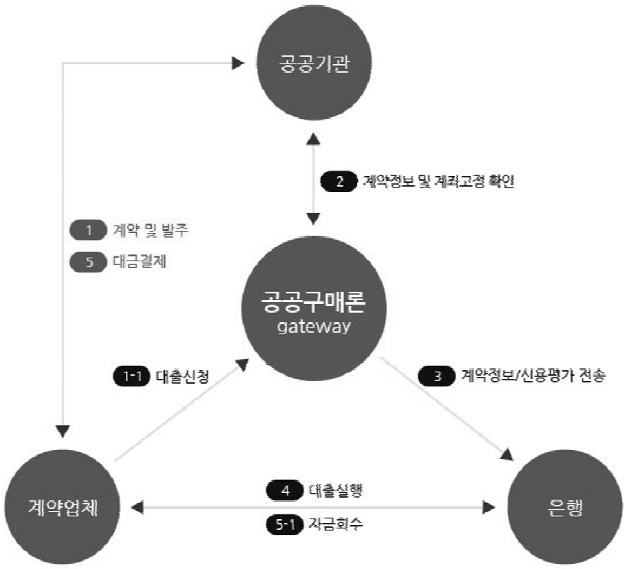
공공기관
2 계약정보 및 계좌고정 확인
1 계약 및 발주
5 대금결제
공공구매론
gateway
1-1 대출신청
3 계약정보/신용평가 전송
계약업체
4 대출실행
5-1 자금회수
은행

문의처

-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5
- (신청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 042-712-5629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콜센터 : 1533-0092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동일
지원내용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동일
신청접수	▸(1차공고) 9.1 ~ 10.4 ▸(2차공고) 11.24 ~ 12.7	▸(1차공고) 3.1일 예정 ▸(2차공고) 7.1일 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영 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개발한 자

신청가능제품(인증기관) 단, 공고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 ▸ 성능인증(중소기업유통센터)
- ▸ NEP,NET(과학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건설교통-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건의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재-한국방재협회)
- ▸ GS(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우수R&D혁신제품(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혁신시제품(혁신시제품선정위원회)
-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조달청)
- ▸ 녹색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구매조건부 신기술,민관공동투자기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산업융합품목,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상하수도협회)
- ▸ 재난안전인증제품(행정안전부)
- ▸ 상생협력제품(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내용

- (공공기관수요형)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 (중소기업제안형)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지원 항목 요약 >

지원 항목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처리 불가 항목	증빙서류
제품 설치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또는 직접 철거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에 따라 비교 견적 필요)
제품 철거	기존 설치제품의 철거 비용 또는 실증 완료에 따른 제품 철거 비용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재료비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계측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장비 설비 구매비용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시스템’에 실증지원 희망제품 등록(상시접수)
- (1차 공고) ’24.3월 예정, (2차 공고) ’24.7월 예정

제출서류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문 확인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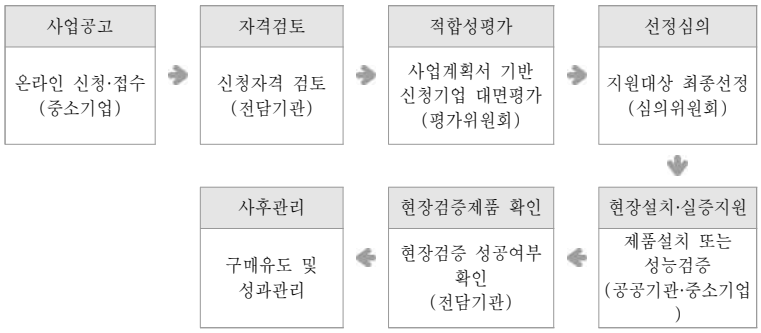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7, 7541
-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 042-712-5632, 5633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9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2 성능인증제도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사업개요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3종)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종
-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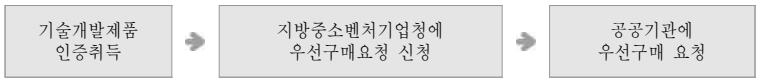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지원규모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18) 4.52조원, ('19) 5.35조원, ('20) 5.63조원, ('21) 6.58조원 ('22) 6.86조원

문의처

-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4	울산	052-210-0013
부산	051-601-5121	강원	033-260-1672
대구·경북	053-659-2237	충북	043-230-5374
광주·전남	062-360-9142	충남	041-415-0678
경기	031-201-6936	전북	063-210-6483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2
대전·세종	042-865-6157	-	-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185 02-3460-9023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216
NET (건설, 교통)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031-389-6485	NET(환경)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02-2284-1631
NET (보건의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02-2095-1738	NET(방재)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성능인증	중소기업 유통센터	042-712-5611~6	녹색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4434
GS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02-860-1416	구매조건부 신기술, 민관공동 투자기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00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02-368-8944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	031-8040-6832
우수R&D 혁신제품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025	물산업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상하수도협회	02-3156-7791
혁신시제품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070-4056-7664	재난안전 인증제품	행정안전부	044-205-418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Q 녹색인증대상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성능인증제도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
(성능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종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 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성능인증 전문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서류

-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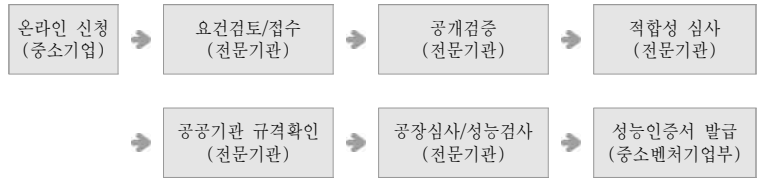

지원규모

- 발급건수 : ('20) 394건 → ('21) 438건 → ('22) 397건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발급년도 기준)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5621,5622,5623,5625)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Q&A

Q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3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정도 소요됩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개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지원대상

구분	기 업	제 품
창업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일반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제품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0억원 이하
소액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업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지원내용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 시 각종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청·접수

-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제품 모집
-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접속 – 사업공고
- 제도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접속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신청

제출서류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규격서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참여구매기관

- 510개 기관 참여 (수시모집)

< 시범구매제도 참여 구매기관 현황('22년) >

(단위 : 개)

행정기관(265)				공공기관(263)					합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8	245	1	1	32	55	61	113	2	528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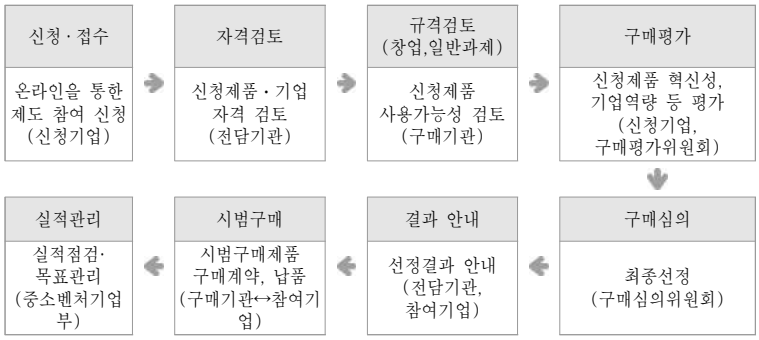

운영실적

- ~'22년 누적
- 선정제품 수 : 1,225개 제품
- 구매금액 : 11,438 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7)
- 중소기업유통센터(우선구매팀, 042-712-5611~5)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제도신청-시범구매)

Q&A

Q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A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③ 특허청 우수발명품 ④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

Q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A. 지원기간은 제품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

Q 시범구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2.5개월이 소요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0 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판로진출지원
10-2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10-3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10-4 동행축제

판로진출지원

사업개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민간채널,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등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에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단, 세부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지원조건 확인 필수)
- 우대사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여성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IT), 1차 식품, 건설자재, 기타 세부 사업별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 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TV홈쇼핑, T커머스,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

- (자사몰 구축)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자사 온라인쇼핑몰(D2C) 구축 등을 지원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검증 및 유통망 연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운영
- (공동브랜드) 독자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되고 있는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65.7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품기술서, 사업신청서 등

● 선정평가 : 기본 요건 확인 → 서류 및 현장 평가 등

* 평가 방법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시장성, 상품성, 가격적정성, 상품구성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대상 선정	→	사업 운영
'24.1월		'24.2월		'24.2월		'23.3~12월

*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및 추진절차는 변동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화) 044-204-7548, 7543
  (이메일) bepratingu@korea.kr, gamjador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전화) 044-204-7512, (이메일) sb021@korea.kr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기획팀 :
  (전화) 02-6678-9343, (이메일) lhdo0606@sbdc.or.kr
  마케팅지원팀 :
  (전화) 02-6678-9322, (이메일) gseee02@sbdc.or.kr
  온라인판로지원팀 :
  (전화) 02-6678-9813, (이메일) moonseek@sbdc.or.kr
  정책매장지원팀 :
  (전화) 02-6678-9715, (이메일) lks@sbdc.or.kr
  기업육성팀 :
  (전화) 02-6678-9314, (이메일) jodonghyeon@sbdc.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마케팅지원사업 TV홈쇼핑 방송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마케팅지원사업 T-커머스 방송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온라인쇼핑몰기획전 모집공고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자사몰(D2C유통망) 참여기업 1차 모집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정책매장 신규입점

– (경로) fanfandaero.kr >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공고·신청 > 지난공고보기 > 해당 사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사업개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제품 상담 및 수리 등 사후관리 시스템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기업(렌털 전문기업 등)
-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 의류, 일회성·소모성 소비재 등 A/S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한 전문 수리대행사를 활용한 A/S 상담 및 수리지원, 챗봇 구축 지원 등
- 지원규모 : 540개사 내외(국비 100%~5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fanfandaero.kr)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계약서 등
- 선정평가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제품성, A/S 필요성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 운영
'24.1월		'24.1~12월(수시)		'24.2~11월		'24.3~12월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마케팅지원팀) :
  (전화) 02-6678-9323, 9326
  (이메일) wngml8581@sbdc.or.kr, lej9256@sbdc.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판판대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사업개요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구매대행 기업 포함)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판로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코칭, 입찰정보 제공, 납품관리시스템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지원
- 지원규모 : '24년 1,400개사 내외 예정
- 지원금액 : '24년 6억원 이내

분 야	내 용
교육	• 입찰(공공조달, 주한미군 등 해외·전자입찰), 마케팅 전략(물류, 상품기획 등) 등 중소기업 취약분야별 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
입찰정보제공 및 컨설팅	• 조달청 입찰정보 분석(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MRO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입찰컨설팅 연계
현장코칭	• 1:1 현장방문을 통해 취급 품목, 목표시장 등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전략 (입찰수주, 마케팅 등) 제시
MRO납품관리 시스템	• 납품 중소기업이 입찰 또는 계약시 제품 주문·발주·납품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제공
온라인몰 입점 지원	• 대형 MRO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중소 MRO 납품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지원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 신청방법 :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제출서류는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기업등록	→	지원 신청	→	지원 확정	→	지원·제공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업→센터		센터→기업		종합지원센터 (또는 위탁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전화) 044-204-7914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전화) 02-6678-932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용어 설명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MRO) : 기관 운영 및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

동행축제

사업개요

- 대형유통망,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판촉 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통해 내수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B2C 소비재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중견기업·대형협동조합 제품, 해외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및 유통 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

지원내용

- 동행축제 기간* 온·오프라인 판촉(기획전 등) 및 대외 홍보 지원

* '23년의 경우 5월('23.5.1~28), 9월('23.8.30~9.27)에 진행

신청·접수

- 판판대로(판판대로.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 서류, 추진 일정 등 세부 안내는 판판대로 내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상세기술서(사업 공고를 통해 별도 서식 공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 제품의 온라인 상세페이지

처리절차

- 동행축제 행사 개최 2~3개월 전 판판대로(판판대로.kr)를 통해 온라인 공고 예정

< 참고 : '23년 사업 및 신청 일정 >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 운영
5월 동행축제	'23.3.2(목)	'23.3.2(목) ~3.29(수)	'23.4월 중	'23.5.1(월) ~5.28(일)
9월 동행축제	'23.6.28(수)	'23.6.28(수) ~7.25(화)	'23.8월 중	'23.8.30(수) ~9.27(수)

지원규모

- 회당 300개사 내외

  * '23년 기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881, 9882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판판대로(판판대로.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5 부

수출 지원

제 11 장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1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1-1 수출바우처
11-2 수출컨소시엄
11-3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1-5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11-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11-7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수출바우처

사업개요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전년동
지원내용	법률·세무·컨설팅 분야 사후지원 미허용	기업별 수요가 높은 법률·세무 컨설팅 등에 사후지원 범위 확대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전년동
평가지표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 평가지표 신설	'신시장 개척 노력' 평가지표를 확대(20%→30%)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수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 차등지원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트랙별 수출액 기준 >

트랙	수출액 기준
내수 (튼튼한 내수)	전년도 수출액 0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단달러 미만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홍보동영상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등
통번역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시험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 환보험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
홍보/광고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지원영역	지원항목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브랜드 개발·관리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국제운송	•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무역보험	• 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지원규모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3,200여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1차), 4월(2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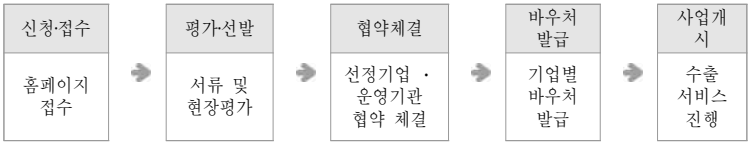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수출컨소시엄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주관단체) 조합, 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수출 유관기관, 민간 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	(주관단체) 조합, 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수출 유관기관, 민간 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
신청접수	(주관단체) '22.9월 (참여기업) '23.1~12월(연중)	(주관단체) '23.9월 (참여기업) '24.1~12월(연중)
지원규모	75개 컨소시엄(1,200여개사), 141억원	75개 컨소시엄(1,300여개사), 158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단체와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 우대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동행축제 참여기업, 환변동보험 참여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비용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현지파견 비용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 지원규모 : 컨소시엄 70여개 파견(약 1,300개사)
- 지원금액 : 158.5억원

신청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주관단체) ’23.9월 / (참여기업) ’24년 연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 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
- 제출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수출실적 등 수출역량,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

● 전체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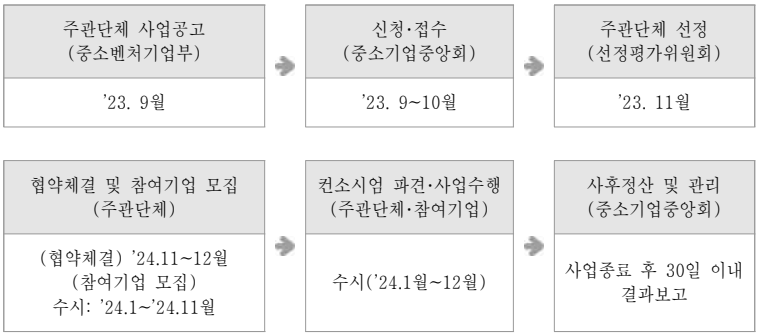

● 참여기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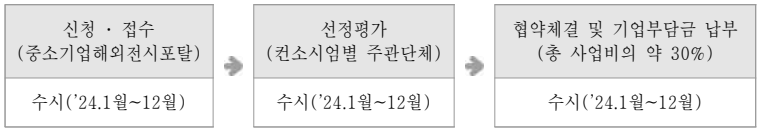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12, (이메일) sb021@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
(전화) 02-2124-3293, (이메일) leesangeon@k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24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23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개요

글로벌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온라인 수출 희망 및 진행 기업	전년동
지원내용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마케팅, 배송 등을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패키지' 지원	온라인 수출 패키지 신청 시 기업별 맞춤형 온라인 수출 로드맵 컨설팅 지원 확대
신청접수	내역사업별 모집 공고	내역사업 통합 공고
지원규모	6,000여개사, 398억원	6,000여개사, 408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각 내역사업별 요건에 따름
-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및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등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지원

①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하여 중기제품의 판매대행 및 직접수출을 지원

② (자사몰진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③ (미디어콘텐츠마케팅) 국가별 플랫폼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연계 프로모션 등 지원

④ (온라인수출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포럼, 정기교육 등 제공, 온라인수출 관련 애로해소센터 등 운영

- 공동물류 지원

①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량집적 등을 통한 물류비 할인 등 지원

-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① (온라인수출패키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온라인수출지원 및 공동물류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3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

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 2차 최종 선정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서류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지원	→	사후관리
'24년 3월		'24년 3~4월		'24년 4월		'24년 4~11월		'24년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자사몰 진출사업」 참여기엄 모집 공고
  - 「2023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물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고비즈코리아 - 고객지원센터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개요

수출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건은 지원 가능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 ~ 7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구분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 원 미만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일반인증	4건	연간 100,000	70%	60%	50%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존재
ESG·탄소중립 관련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 지원규모 : 약 1,0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금액 : 15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일반트랙) 2월, 5월, 8월, (패스트트랙*) 3월 ~ 상시

  * 패스트트랙 대상인증(7개 인증)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HALAL(식품),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기업 회원

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 선정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	▸ 누리집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관리기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신청업체 평가	관리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운영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실시
중간보고(필요시)	참여기업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등 보고
완료보고	참여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전화) 044-204-7507, 044-204-7505
(이메일) eoskaqn102@korea.kr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02-2164-0173~8, (이메일) mail@ktr.or.kr

● 해외 인증 문의처(해외인증 전담대응반) : (전화) 1577-991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기존 지정제도를 통합하면서, 강소+단계* 신설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이력 보유 &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강소+에 적용되었던 글강 지정이력 요건을 삭제, 지정단계 구분을 수출액 기준으로만 설정
지원내용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 사업 연계 지원 강소트랙에 한정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 사업 우대지원 대상을 강소·강소+ 기업으로 확대
신청접수	별도 접수창구 부재	지정제도 전용 홈페이지 구축

지원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액을 보유한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기업 수
유망 단계	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500개사 내외
성장 단계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300개사 내외
강소 단계	전년도 수출액 '500~1,000만 달러 미만'	200개사 내외
강소+단계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 수출액에는 직접수출, 간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 서비스수출액 모두를 포함

신청제외 대상

- ▸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휴·폐업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 평가 면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컨설팅, 물류비 할인 및 물류 컨설팅 지원 등

- (R&D 트랙 우대지원)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기정원) 트랙 지원시 우대지원(강소·강소+)
-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소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제품 제작, 전시회 지원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강소)
- 지원규모 : 수출 유망중소기업 1,000여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예정)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수출이행계획서 등
- 선정평가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발표 평가) 강소트랙 한정 지자체·지역혁신기관 발표평가 진행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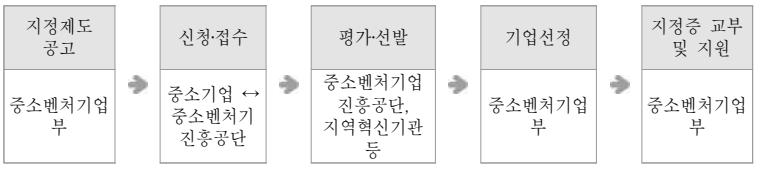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개요

주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산업내 선도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소비재 및 산업재 중소기업	전년동
지원내용	PoC 과제 1:1 매칭 운영	1:多, 多:多 등 다자간 PoC 추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제한된 기업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선도기업 :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 신청자격의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내용

- 소비재 :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컨텐츠와 해외 방송채널, 미디어, 온·오프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에서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 지원

<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

사업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소비재	• (K컨텐츠)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산업재 프로젝트유형은 1억원 한도
	• (유통망)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방송 채널 및 SNS,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개척 지원	
산업재	• (인프라)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 지원	
	• (프로젝트)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현지수주 교섭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05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1차), 4월(2차)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www.win-win.or.kr) 내 사업공고 참고
- 선정평가 : (1차) 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조정위원회
- 추진절차

과제 모집공고	→	과제 선정	→	과제 협약	→	과제 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협력재단		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협력재단·주관기업		주관기업·참여기업		주관기업·협력재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9, 750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473, 764, 758
- 기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1차)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재단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11-7 임차료의 80% (2차연도는 50%) 지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내용	독립실 입주, 회의실, 공유오피스 이용, 거점별 특화 프로그램(제품 현지화, 인증 등)	독립실 입주, 회의실, 공유오피스 이용, 거점별 특화 프로그램 (기술교류, 투자 등 분야 확대)
운영규모	13개국 21개소	14개국 22개소(인니 자카르타 개소)
지원예산	175억원	178억원
신청접수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상시 모집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상시 모집
이용기간	최대 4년(2년(+2년))	최대 4년(2년(+2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 및 정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 우대사항 :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참여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혁신성장포럼 기업(구_중진공 Family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현지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현지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임차료 일부 지원 (1차년도 80%, 2차년도 50%) 지원
  - 사무공간(12~20㎡),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 지원규모 : 13개국 21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 총 270개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중국)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선전, (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리야드
- 지원금액 : 17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독립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공유오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온라인 예약시스템

(www.gbc.kosmes.or.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입주활동 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등
- 선정평가 : (1단계) 현장실사 → (2단계) 해외시장성 평가 → (3단계) 심의·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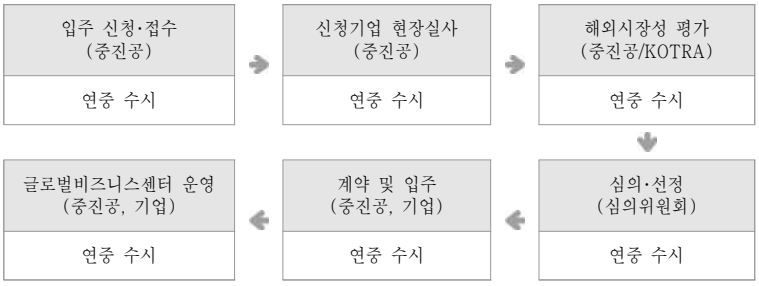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12 (이메일) sb021@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전화) 055-751-9684 (이메일) yb0602@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 12 장 ▸ 여성기업 지원
제 13 장 ▸ 장애인기업 육성
제 14 장 ▸ 지역기업 지원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2 장

여성기업 지원

12-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12-2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12-3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12-6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12-7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운영
12-8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12-9 미래여성경제인육성
12-10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 창업 정보 등을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프로그램)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개최 및 포상(4개사)	(프로그램)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개최 및 포상을 졸업기업까지 확대(7개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여성기업
- 지원조건 :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입주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자
- 우대사항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기술 창업 분야 등 우대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는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이 불가한 기업
- ▸그 밖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여성기업육성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여성창업 보육 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면적은 센터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실당 30㎡ 규모
  - 공동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여성 전용 휴게실, 수유 시설 공간, 공동 사무기기, 제품 촬영 스튜디오, 화상 회의실 등
    * 지역센터별로 공동시설 내용은 다를 수 있음
- 여성창업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여성창업 정보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 여성기업(인), 창업지원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연계
- 우수 입주 및 졸업기업 선발 및 시상(대상 등 7개 기업)
- 지원규모 : 전국 18개 센터, 238개실 운영
- 지원금액 : 31.6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등 종합적 평가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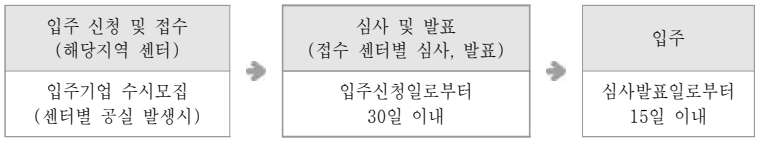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 044-204-7427, 7431, (이메일) seojn@korea.kr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02-369-0993, 0920,
(이메일) leetk@wbiz.or.kr, yhkim@w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지역센터 연락처 >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부	(02) 369-0900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5192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인천	(032) 822-9622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충북	(043) 236-6561	(28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전북	(063) 272-9973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94-9608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차룡로48번길 44, 16층 1601호-16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세종충남	(041) 569-0572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6-3999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동(공단동)

Q&A

Q 입주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보증금은 약 100만원~150만원이며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센터별로 사무실 전용면적에 책정된 3.3㎡당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3.3㎡당 35,000원, 부산 3.3㎡당 16,000원, 대구 3.3㎡당 20,000원, 광주 3.3㎡당 10,000원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가 포함되어, 입주신청 혹은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고 이후 여성기업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만 입주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 간 친화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수유시설 등 여성기업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전년도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명)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검색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명)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 (경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공지사항 → 검색어 '입주기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우수 여성창업자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①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②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프로그램) 사전교육, 시상,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등 후속지원 (지원규모) 수상자 34팀, 사업화지원 50팀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설, 수상자 및 사업화지원 대상 확대 (지원규모) 수상자 40팀, 사업화지원 60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창업경진대회)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단,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미만)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신청제외 대상

(창업경진대회)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 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투자유치 30억 이상을 받은 자(기업)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기업)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창업경진대회)

- 교육 및 멘토링 :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 시상 : 수상자 40팀(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상금 2,000만원)
- 후속지원 :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자격 부여(상위 26팀 이내), 초기 사업화자금(60팀, 기업당 400만원 내외), 투자유치, 언론홍보, 네트워킹 등
- 지원규모 : 수상자 40팀, 사업화 지원 60팀

- 지원금액 : 상금(총 0.84억), 사업화 지원(2억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교육 : 수출 우수사례 및 수출전략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전교육
-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지원 : 해외 진출 역량진단 전문가 컨설팅, 참여기업 영문 홍보 책자 제작 등 홍보 지원
- 해외시장 개척 : 해외시장 정보 제공 지원, 전시회 참여기업 부스 설치 및 참가비 지원
- 지원규모 : 교육(신청자 전원), 컨설팅(100팀), 글로벌 홍보 지원(30팀), 해외시장 개척(25팀)
- 지원금액 :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1억원), 해외시장 개척(1억원)

신청·접수

(창업경진대회)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각 1부
- 선정절차 : 3단계(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 주요 내용 :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재무계획, 팀 소개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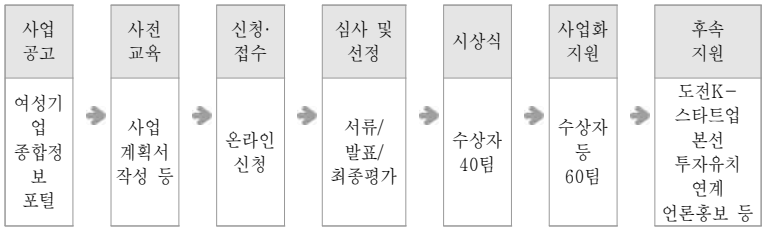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각 1부
- 선정절차 : 교육, 컨설팅 등을 받은 여성기업 중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선순위로 선정
- 선정 주요 내용 : 아이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참여 전시회 적합성, 해외 전시회 참여 준비도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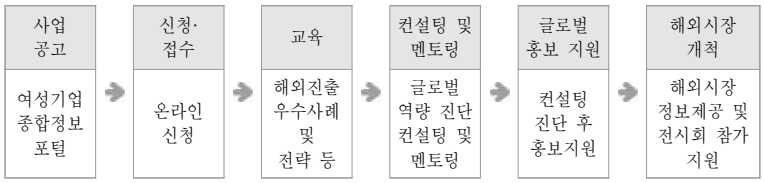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 044-204-7427, 7431, (이메일) seojn@korea.kr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02-369-0943, (이메일) kangkh@w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부	(02) 369-0943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5192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인천	(032) 822-9622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충북	(043) 236-6561	(28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전북	(063) 272-9973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94-9608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차룡로48번길 44, 16층 1601호-16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세종충남	(041) 569-0572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6-3999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동(공단동)

■ 전년도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

① 창업경진대회

● 공고명 : 2023년 W-스타트업 어워즈 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검색어 'W-

스타트업어워즈’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W-스타트업 어워즈 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

- (경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공지사항 → 검색어 ‘W-스타트업어워즈’

- (홈페이지) 상세보기

②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전년도 사업공고 없음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MD상담회, 판로역량 강화교육, 홈쇼핑입점, SNS 홍보 등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프로그램) MD 구매 상담회 (지원규모) 200명 내외	(프로그램) 맞춤형 MD 상담회 (지원규모) 300명 내외
	(프로그램) 판로역량 강화 교육 (지원규모) 600명 내외	(프로그램) 판로역량 강화 교육 (지원규모) 700명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상품을 보유한 여성기업
- 지원조건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우대사항 : 동 사업 신규 지원자(우선 선정)

지원내용

- 맞춤형 MD 상담회
  - 국내 대형유통사 MD들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유통사 입점 절차, 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 제시, 맞춤형 판매 컨실팅 등 지원
- 판로역량 강화교육

– 홈쇼핑, 대형유통망, 마케팅, 이커머스 등 각 유통채너별 마케팅, 브랜드, 제품기획 등 실제 사례 공유 및 맞춤 전략 교육

- 홈쇼핑 입점

– 공영홈쇼핑 입점 관련 컨설팅 및 인서트 영상, 방송 수수료 지원

- SNS 홍보 지원

–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영상을 활용한 제품 소개, 디지털 유통사 진출을 위한 제작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 ~ 10월
-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 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제품 소개서, 판로별 입점 지원 신청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 044-204-7427, 7431, (이메일) seojn@korea.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 02-369-0923, (이메일) jml@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 확인 등에 사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청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 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여부에 따라 다름
  -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 처리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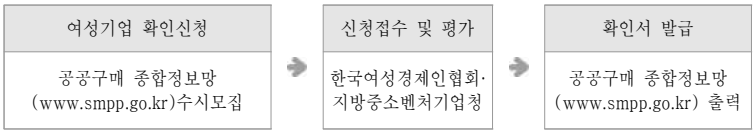

- 발급규모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72,011개사('23.11월 기준)

문의처

- 여성기업확인서 콜센터 : 02-2038-895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 : 02-369-0932
-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지회)

지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회	(02) 369-0932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6028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3층
강원	(033) 233-550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2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충북	(043) 231-7807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0	51391)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601호
제주	(064) 726-6008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0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1-2612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한양애드가 4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5-4563	39370)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호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현장실사 후,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여성기업과 현장 확인자와의 조율을 통해 일정을 잡기 때문에 보통 14일이내에 발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년중 상시 무료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우리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종합정보망에서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여성기업 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법에 따른 판로, 금융, 인력 등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여성기업 공공입찰 실무교육 실시 및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 여성기업 홍보를 위한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등록 및 전자홍보책자를 통한 여성기업 홍보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지원규모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23년 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2,175개사, 18,518개 제품 등록)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 방법 실무교육

  * 입찰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 사업 분야별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kwbiz.bidcp.net) 제공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에 제품등록 지원
- 홍보 전자책자를 제작하여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biz.or.kr)을 통해 홍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 입찰 실무교육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입찰실무교육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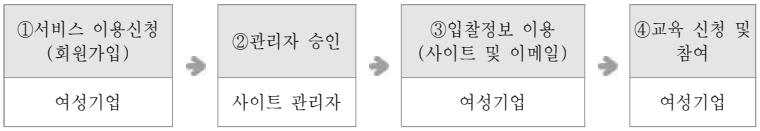

  -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 kwbiz.bidcp.net 회원가입 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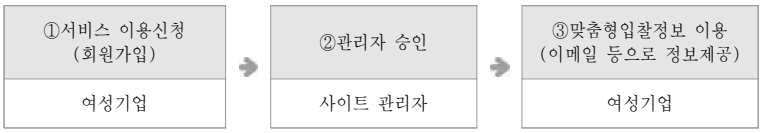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 shopping.wbiz.or.kr 일반회원 가입 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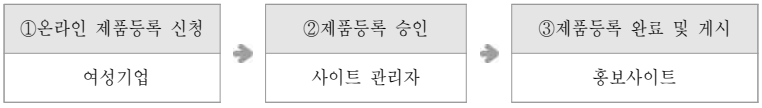

  - 홍보전자 책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책자 제작 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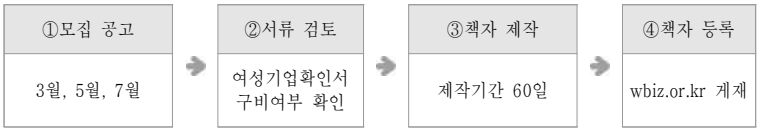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 참조

Q&A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 중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는 3%이상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 「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A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 (http://shopping.wbiz.or.kr)는 여성기업확인서이 유효한 업체 중 제조, 용역업체는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도소매 업종 제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업체의 물품을 등록가능하며 공공기관이 구매희망하는 내용을 견적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칭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여성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구인정보 등록부터 일자리 정책 연계·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

지원대상

- (구인기업)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대표가 여성인 기업)
- (전문인력) 전문직·프리랜서·경력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 분야 : 디자인, IT기술, 마케팅, 수출, 회계, 인사 등

지원내용

- 여성기업 프로젝트, 전문인력 매칭(여성기업 전담 매니저의 1:1 관리)
-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구인공고 홍보 지원
- 업무용S/W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및 안전 결제 시스템
-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제도 연계(고용지원금·교육·창업·자금)

신청·접수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구인기업)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등록
  (전문인력)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등록 후 지원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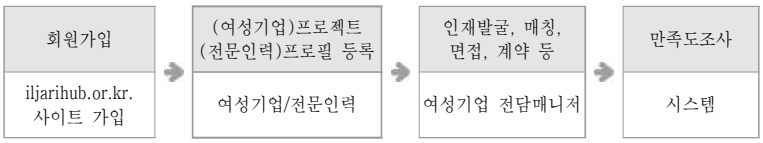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ihub@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www.iljarihub.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위원과 선배 여성 CEO 멘토링단에서 수시 상담하여 문제 해결

지원대상

-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내용

- 전국 6개 권역센터에 배치된 전문가 또는 선배여성CEO를 통해 온·오프라인(유선, 현장 방문, 화상 온라인 등) 컨설팅 및 경영애로 상담
- 상담분야

구분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및 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신청·접수

- (온라인)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sk.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전화 02-369-0948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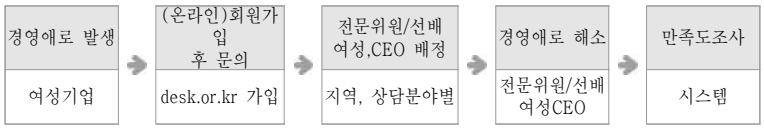

지원규모

- 전국 6개권역(서울/경기/인천/경상/동남/충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ihub@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권역별 연락처

지역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부	(02) 369-0948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경기	(031) 211-0292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여성 경영자 대상 지역별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여성기업 경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공 및 여성경제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데이 개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20편, 유튜브), 오찬포럼(1회), 네트워킹데이(1회) (지원규모) 오프라인 294명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5편, 유튜브), 지역별 커뮤니티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 통합 네트워킹데이(1회) (지원규모) 오프라인 250명
신청접수	(공고예정시기) 오찬포럼: 6월, 네트워킹데이: 10월	(공고예정시기) 지역별 교육: 5월, 통합네트워킹데이: 하반기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여성 CEO 및 임원

지원내용

- (유튜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지역별 교육)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추진
- (통합 네트워킹데이) 지역별 교육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인 사이트 제공 및 여성 경제인 간 네트워킹 도모 기회 제공

신청·접수

- 온라인 콘텐츠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수강 ('24.7~)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womanbiz

- 지역별 교육 : 지역별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24.5~)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공고 예정 (https://kwbiz.or.kr/intro/intro_07)

- 통합 네트워킹데이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www,kwbiz.or.kr) '공지사항' 참고 ('24. 하반기)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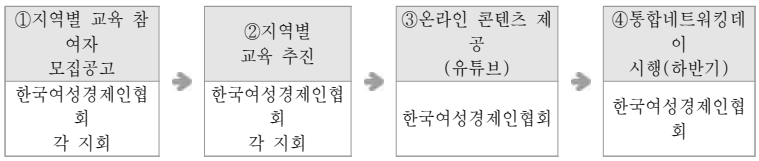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 044-204-7427, 7431, (이메일) seojn@korea.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 02-369-0925, (이메일) today@w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3년 여성 CEO 네트워킹데이 참가자 모집
  - (경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공지사항 → 검색어 '네트워킹

데이’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지역별 커뮤니티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커뮤니티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통합 네트워킹데이는 지역별 교육에 참여한 사람만 참가 가능한가요?

A 통합 네트워킹데이는, 지역별 교육에 참여하신 여성CEO(여성임원, 예비여성창업자 포함), 여성경영인 간 교류협력을 원하시는 여성CEO(여성임원 포함)라면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수강료가 있나요?

A 온라인콘텐츠는 무료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과정 참여 시에는 소정의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성공한 여성기업인 선배들이 후배 여학생들에게 실전창업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여학생의 성공적인 창업·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특성화여고, 여자대학(전문여대/일반여대)	여자고교 (특성화여고/일반여고), 여자대학 (전문여대/일반여대)
지원내용	(프로그램) 비전선포식, 여성CEO 특강, 창업아이디어 멘토링, 여성기업 탐방, 글로벌 현장탐방, 통합 워크숍 (지원규모) 16개 학교	(지원규모) 30개 학교

지원대상

- 여자고교(특성화여고, 일반여고) 및 여자대학(전문여대, 일반여대) 재학생

지원규모

- 총 30개 학교

지원내용

- 2기 출범식, 여성CEO 특강, 창업아이디어 멘토링, 여성기업 탐방, 글로벌 현장탐방, 통합 워크숍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2기 출범식	비전공유 및 오리엔테이션 등
여성 CEO 특강	여성CEO 특강, CEO와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창업아이디어 멘토링	사업참여 학생 창업아이디어 제출 → 창업아이디어 선정 및 이에 대한 소비자반응조사 → 멘토링
여성기업 탐방	여성CEO와 함께하는 실전 국내 비즈니스 현장탐방
글로벌 현장탐방	여성CEO와 함께하는 해외 비즈니스 현장 체험
통합 워크숍	여성CEO와 함께하는 워크숍(성과공유, 특별강연 등)

신청·접수

- 여학교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kwbiz.or.kr) 공지사항 확인 후, '참여학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24.2~3)

  * 신청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등

- 추진절차

① 참여학교 모집 공고 (2월)	→	② 참여학교 신청접수 (2~3월)	→	③ 참여학교 선정 (3~4월)	→	④ 프로그램 운영 (4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 044-204-7427, 7431, (이메일) seojn@korea.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 02-369-0955, (이메일) today@w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 참여학교 모집 공고
  - (경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공지사항 → 검색어 ‘참여학교 모집 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각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학교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A 각 프로그램은 동일한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선정된 학교의 여건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Q '글로벌 현장탐방'은 어느 국가를 방문하며, 본 사업 참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나요?

A '24년 방문 국가는 미정이고,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탐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참여학교가 선정되면, 참여학교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의 경우, 글로벌 현장탐방 방문국가는 '미국'이었고, 16개학교의 총18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Q '23년도 참여학교가 '24년에도 신청한다면, 선정심의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이 있나요?

A 명시적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학교 선정 심의 시, '23년도 사업추진을 통해서 경험치를 획득한 학교의 노하우, 관리방안 등을 표현해주시면, 긍정적인 반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전국 여성CEO들이 한자리에서 경영 노하우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경영애로 해소 및 여성경제인 간 네트워킹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여성CEO 및 여성 임원

지원내용

- 전문가 초청강연, 여성기업 경영 우수사례 공유,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경영 애로사항 상담, 지역 탐방 등(1박2일)

개최지역

- '24년 개최지 미정

  * 최근 개최지 : '21년 충남 예산군, '22년 울산광역시, '23년(대체행사) 전남 진도군

참여규모

- 전국 여성CEO 및 여성 임원 1,000명

신청·접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kwbiz.or.kr) 공지사항 확인 후, '경영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24. 하반기)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참가신청서, 참가비 등 필수제출사항 확인 필요

  * 참가비 : '24년 참가비 미정('23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기준, 1인당 10만원)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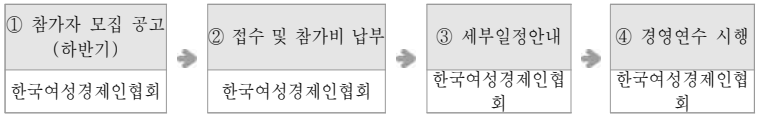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 044-204-7427, 7431, (이메일) seojn@korea.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 02-369-0925, (이메일) today@wbiz.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제 13 장

장애인기업 육성

1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13-2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13-3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3-4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13-5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3-6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13-7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13-8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13-9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3-10 MAS 컨설팅 및 등록
13-11 전국장애경제인대회
13-12 공공구매제도 운영
13-1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및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온라인 창업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1:1 창업 컨설팅 지원
  - (온라인교육) 장애인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창업-NET)을 통한 창업 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교육 및 유관기관 강의 콘텐츠 제공
  - (특화교육)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기술 교육 제공
  - (컨설팅)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1:1을 통해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 총 1,500명 내외(온라인교육 1,150명, 특화교육 100명, 컨설팅 250명)

- 지원금액 : 6.74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① 온라인교육 : 연중수시 ② 특화교육 : 4월 ③ 컨설팅 : 2월, 6월
- 신청방법 : ① 온라인교육, ② 특화교육: 창업-NET(https://start. debc.or.kr/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③ 컨설팅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① 온라인교육 : 없음 ② 특화교육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③ 컨설팅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절차 : 필수 제출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 확인을 통한 선착순 모집
- 추진절차 :

① 온라인교육

회원가입	→	교육신청	→	교육수강 및 설문조사	→	수료증 발급
연중 상시		교육생/센터		교육생		교육생
창업-NET		창업-NET		창업-NET		창업-NET

② 특화교육

신청·접수	→	기본공통, 업종심화교육	→	체험/실습 및 멘토링	→	수료증 발급
센터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생
창업-NET		교육장		실습장소 등		창업-NET

③ 컨설팅

신청·접수	→	1:1 전문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	후속지원
센터		수행기관		대상자-컨설턴트		센터
우편, 이메일 등		유선		상담장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예전에 창업넷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당해연도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23년도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Q 전문가에게 창업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서류의 미비나 누락 확인을 통해 1:1 매칭을 진행합니다.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개인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창업-NET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센터 주관의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과 유관기관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6월~7월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5월~6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지원조건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우대사항 : 중증, 여성, 저소득, 청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구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 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구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매장 인테리어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기구입비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 지원규모 : 총 6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2월~3월, (하반기)5월~6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

지원신청 및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화자금지원
2월~3월, 5월~6월	4월, 7월	4월, 7월	5월, 8월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4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알림마당 > 사업공고 내 게재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매장 인테리어,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집기구입, 폐업지원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초기 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창업자와 재기창업자가 대상이라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보유한 사업자를 업종을 전환하여 재창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7년 이내에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 우대사항 : 중증/저소득/청년/여성장애인, 아이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대표자, 센터 주관의 창업교육 수료생 등

신청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최대 1,000만원) 지급
- 지원규모 : 총 11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6)
- 지원금액 : 총 3,200만원(대상 1,00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7월~8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참가자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과 사업전략 등
- 추진절차 :

참가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시상
7~8월		9월		10월		11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경진대회 가점부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A 가점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중증, 저소득, 청년, 여성,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생, 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항목 당 2점씩 최대 10점을 부여합니다.

Q 1차 서류심사의 선발기준이 뭔가요?

A 참가자의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 및 차별성과 사업전략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자 11명의 2배수, 즉 22명을 선발합니다.

Q 2차 발표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5~10분 내외의 PT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 지원조건 :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해당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1년), 최대 2년간 창업활동 지원(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활용)
- 지원규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8개소 운영(1개소당 교육생 평균 20팀)
- 지원금액 : 24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연중 수시(결원 발생 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면접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사업에 대한 요건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
-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예비창업자 입주	→	창업/기술교육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특화사업부
  02-2181-6571,657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광주)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진주)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특화사업장 운영 및 구축현황

지역	아이템	구축경과	문의처
경북 안동시	표고버섯 활용한 식품제조	운영중	054-900-1258
광주 광산구	친환경 채소 스마트팜	운영중	062-456-1136
충남 태안군	곤충사육 및 건조 스마트팜	운영중	041-674-0031
제주 제주시	표고버섯 재배 스마트팜	운영중	064-901-1580
충남 공주시	공주밤, 논산딸기 등 가공식품	운영중	042-932-9077
경남 진주시	새싹삼 재배 스마트팜	운영중	055-924-1017
충남 아산시	아산맑은쌀 가공품	구축중	041-911-6446
전북 익산시	딸기 재배 스마트팜	구축중	063-237-5354

Q&A

Q 발달장애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보호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가족(보호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767조 근거한 친족(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혈족·인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Q 장애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Q 특화사업장에 입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지역별 특화사업장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특화사업장 : 창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장비,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 지원 세부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완료보고서 제출	⑤지원금지급
3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전시회참가 후	매월 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전시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지원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70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해외온라인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지원

지원구분	인증마크명
1 타겟국가 온라인홍보	• 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
	• 셀링오퍼 & 인콰이어리 수신지원
2 타켓 바이어 마케팅	• 기업별 타겟 관심국가 내 현지어 버전 구글 마케팅
	• 관심 바이어 상세정보/컨택 보고서 제공
	•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3 맞춤형 추가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정보 제공
	•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지원
	• 글로벌 SNS 게재

- 시장개척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컨설팅지원/ 시장개척단파견	⑤사후관리
2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컨설팅 (12월 말까지) 시장개척단(파견일정 추후공지)	지원완료 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수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시장개척단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 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용어 설명

해외온라인마케팅 : 해외 바이어에게 실시간 노출되는 온라인 홍보관 구축, 글로벌 B2B 플랫폼 내 키워드 상위 노출 광고 지원

시장개척단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 바이어 발굴·매칭 후 현지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유망 아이디어의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 신청조건 : ①참여기업-②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① 참여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 ② 제작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
- 우대사항 :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분야별 상이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공급가액의 10~30% 현금 부담과 부가세 및 관세)

- 지원 세부내용

단계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 목업	시제품 금형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결과물	최종보고서,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지급 방식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 ※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출 필수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단계	선정 기준	평가 기준
1차 서류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2배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
2차 발표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내에서 고득점자순 선정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기대효과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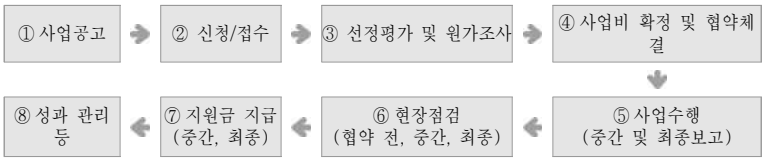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시제품)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제품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A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은 제품디자인이 아니므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가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업비는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확정(조정)되며, 기업규모(중기업/소기업/예비창업자)에 따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 잔여 개발비용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용어 설명

제품디자인제작지원 :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체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 비용 지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제작지원 : 제품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의 형태설계 및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부품들을 Mock-up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토하고,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 목적의 금형 제작 전 단계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금형 : 디자인 도안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워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시제품 금형(부분품 포함)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장애인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비용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조건 : 당해연도 1.1.~ 사업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최종결과물 제출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 우대사항 : 주관기관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자(기업)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영역	지원항목
인증획득 (컨설팅비 포함)	■ 해외규격인증: CE, UL, CSA 등 ■ ISO인증: ISO9001, ISO14001, ISO22000, ISO45001, ISO13485, ISO37001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 우수 조달제품 등

지원영역	지원항목
	■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KS, 환경표지,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등 ■ 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지식재산: 국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 시험비: KOLAS 인증기관 등(시험성적서)
마케팅	■ 광고: TV, 신문지, 지하철 옥외광고 등 ■ 브랜드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CI 등 제작 ■ 홍보 동영상: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 SNS 마케팅: SNS채널(블로그/인스타/페이스북) 인플루엔서 마케팅 ■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홈페이지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인증획득분야 10개사, 마케팅분야 1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 3건 지원

  * 해외규격인증만 3,000만원 한도 내 1건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제품)사업화 전략, 기업(제품) 경쟁력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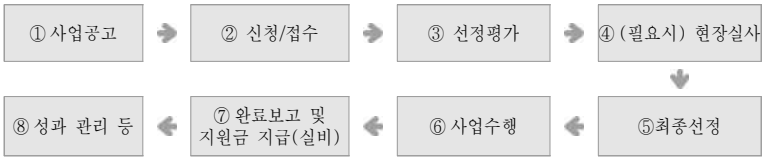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모집 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인증)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인증획득 비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인증획득 비용이란 선정기업에서 지출하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이며,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이며, 컨설팅비란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Q 선정기업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 후보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선정기업은 인증획득 및 마케팅 활동 후 15일 이내 또는 사업 마감 기한까지 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를 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기업규모(중기업/소기업)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용어 설명

해외규격인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인증(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 참고)

현장실사 : 선정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지원조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장애인기업확인서 유지
- 우대사항 : 여성장애인,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지원

  –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3월, 6월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보조공학)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지원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선정자가 자비로 기기를 구입하고, 증빙내역을 센터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신청 금액을 지급해 드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여러 개의 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

Q 부가세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센터는 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5백만원)만을 지원하며, 5백만원의 초과분과 부가세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용어 설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1인 사업주

MAS 컨설팅 및 등록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등록 및 공공입찰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6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MAS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 기업별 1세부품명 20품목 이내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입찰컨설팅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

* 공공조달 시장 진입방법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컨설팅

* 전자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 관련 컨설팅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컨설팅 지원	⑤사후관리
3월 중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컨설팅 : 12월 말까지	지원완료 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공공판

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입찰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용어 설명

MAS(Multiple Award Schedule) : 일정 자격 및 조건(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이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장애인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 지원조건 : (모범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이상 영위한 대표
  (유공자)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개인

신청제외 대상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6.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모범장애경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표창
  (유공자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지원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특허청장 표창 5점
- 지원금액 : 해당없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6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선정평가 : 자격검토 → 후보추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 :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 등

- 유공자 부문 :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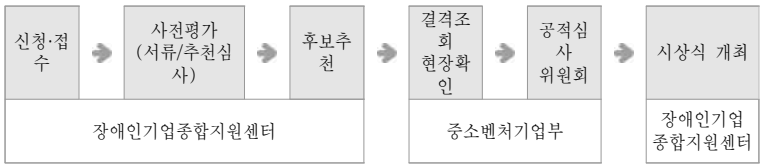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
(전화) 054-842-3773, (이메일) jjh@debc.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추가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제18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포상 신청 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A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부대행사(벤처투자상담회, 장애인기업 간담회 등)를 통해 장애인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투자 촉진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를 확산하는 행사입니다.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인가요?

A 전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대표,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경제인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제도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가능 대상

구 분	유 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제외 대상

구 분	유 형
민법상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병원, 학교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타법인	영농조합법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연합회

-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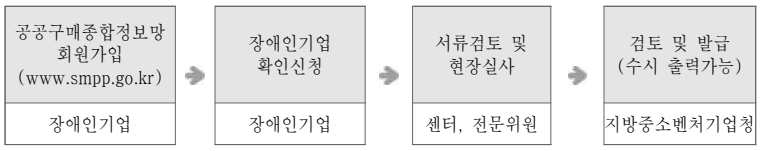

- 제출서류 :

(공동)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협동조합 추가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제도)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함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시,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 필요(단, 입찰과 비교하여 적격심사 생략, 기초단위까지 지역제한 가능)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
  (전화) 02-2181-6542, (메일) jhe@debc.or.kr
- 기타 :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1551-2181)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A

Q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단, '23년 10월 19일 이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2호 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중소기업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확인서를 신청할 시, 과세·면세에 따른 기업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는 어떤 문서로 제출하면 되나요?

A 과세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면세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일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이 힘들 경우, 확인서 신청은 전국 16개 단위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최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 기업
- 지원조건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교육 수료자,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 여부

신청제외 대상

-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입주기업 맞춤형 직접지원(멘토링, 세무지원, 홍보마케팅),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제공
- 지원규모 : 16개 지역센터 124개 보육실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접수(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 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
- 선정평가 : 지원신청-입주심사-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해당 지역 확인하여 문의

지역	담당센터 번호
서울	02-2181-6500
경기	032-322-1940
인천	032-817-1364

지역	담당센터 번호
대전	042-362-9077
강원	033-747-6823
충북	043-238-8243
충남	041-331-0505
광주	062-511-8330
전북	063-237-5354
전남	061-285-7867
제주	064-749-8234
부산	051-329-8230
대구	053-600-8070
울산	052-294-7230
경북	054-842-3773
경남	055-763-3556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서울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대전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신청자격 제한이 되는 업종이 궁금합니다.

A 업종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여행업, 학원,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 아닌 업종)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공고문의 별첨을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는 제한됩니다.

Q 창업보육실 공간 외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판로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입찰정보, 자금조달 지원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유관기관 담당자)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이 있습니다.

Q 선정되면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A 사무편의를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센터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이행보증보험 :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볼 때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

제 14 장

지역기업 지원

14-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4-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14-4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14-5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단, 탄소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지원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차등적용 (단, 탄소바우처는 90% 일괄적용)	매출액 규모에 따라 45~85% 차등적용 (단, 탄소바우처는 40~85% 차등적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하며,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 경비의 40~85% 차등지원

  *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85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120억원 초과~1,500억원 이하(탄소)	40	

바우처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기술사업화, 노무, 인사, 회계, 구조개선 등
	제조혁신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중대재해예방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별도트랙) 탄소중립 경영혁신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아이템 발굴, 인식개선 활동 등
	(별도트랙) 재기컨설팅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환 회생 및 재기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재권 획득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제품시험 및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3.11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진단·평가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바우처 활용

지원규모

- 2,100여개 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컨설팅이 필수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필수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사업개요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

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재원 등의 확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접수

- 연중상시
  *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와 협의

제출서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주요정책-정책소개-분야별-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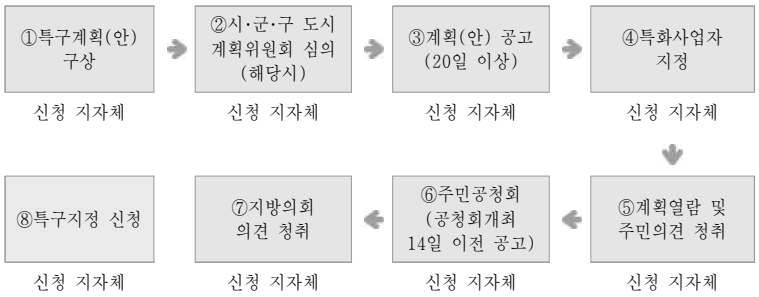
①특구계획(안) 구상
신청 지자체
②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당시)
신청 지자체
③계획(안) 공고 (20일 이상)
신청 지자체
④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지자체
⑤계획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신청 지자체
⑥주민공청회 (공청회개최 14일 이전 공고)
신청 지자체
⑦지방의회 의견 청취
신청 지자체
⑧특구지정 신청
신청 지자체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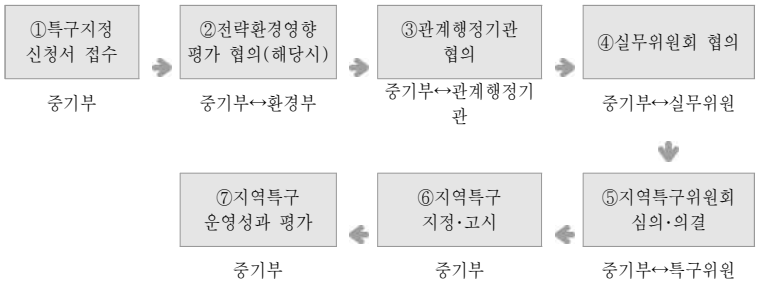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044-204-7591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개요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시군구 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기업성장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주력산업 : 14개 시·도 60개 산업
* 시군구 연고산업 :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기초지자체 연고산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지역주력산업, 시군구 연고산업 영위 지역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역주력산업 : 기술개발 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

작, 기술지도, 디자인, 마케팅, 시험분석 등 기업성장서비스 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인식개선, 사업화 등 기업성장 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732억원(주력산업 512억, 시군구 연고산업 220억))
- 지원금액 : 기업별 5천만원 이내

<지역별 주력(주축+미래 신산업)산업 현황>

시·도		주력(주축)산업	시·도		주력(주축)산업
부산	주축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주축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신산업	전력반도체		신산업	고난도 자율조작
광주	주축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마트홈 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울산	주축	전기자동차 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신산업	산업활용·혁신 AI		신산업	전기·수소차
대전	주축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강원	주축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신산업	5G·6G 위성통신		신산업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충북	주축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충남	주축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신산업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신산업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전북	주축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주축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헬스케어
	신산업	수전해 수소생산		신산업	도심항공교통(UAM)
경북	주축	첨단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주축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신산업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신산업	소형모듈형원자로 (SMR)
제주	주축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주축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신산업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신산업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 지역협력형 미래신산업 : 수소 저장·운송(제주·경남·부산·울산), 유전자·세포치료(대전·경북), 차세대 고성능 센서(대구·강원),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전남·전북), 반도체 패키징(충남·충북·광주)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지원내용>

지원분류	지원내용
혁신화&성장촉진	지역의 전통산업 기업군을 ICT·플랫폼 기술 등을 접목하여 고도화하거나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신규 추진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주관기관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테크노파크, 지역 대학·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단, 과제별 특성에 따라서 테크노파크 지정 방식으로 운영)
  - 지원기업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 및 시·도별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지원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주관기관 선정 이후, 주관기관별 기업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주관기관 :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지원 역량 전반
  - 지원기업 : 지원 필요성,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등
    * 심사·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확인
- 추진절차

(지역혁신기관) 지원기업 모집공고 → (지원기업) 신청·접수 → 사전검토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선정기업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87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044-300-0825, yooym@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Q&A

Q 지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지역별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 혹은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며, 해당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합니다. 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혹은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진행됩니다.

Q 지원기업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기업의 지원조건은 매출액, 수출액 및 기업규모, 산업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해당 내용은 기업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대상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사업화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지역혁신기관이란?

지역 내에서 인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등을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이 포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개요

지역특성에 기반, 지역·중앙이 협력하여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기업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응체계 구축·운영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긴급처방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긴급처방 지원시기) 상반기, 하반기 지원(단계결정 후)

지원대상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경영위기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Stand-up 맞춤지원 대상 밀집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및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그 외 세부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지역경기동향 분석,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등) 추진 및 위기진단기업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기업현장실사 기반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해 컨설팅, 기술, 사업화 등 맞춤 지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신청지역의 조사분석 및 지정지역 사후관리

● 지원규모 :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12개 시·도별 약 15개사 내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4.6억원

● 지원금액 :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기업별 최대 8백만원 지원

신청·접수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계획

– 신청방법 :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 선정평가 :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신청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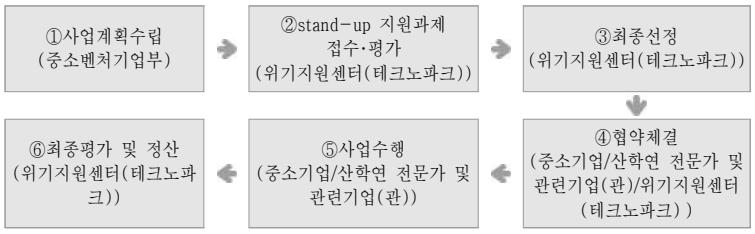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지정

– 신청방법 :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사전·서면검토), 정성(현장실사·보고서) 평가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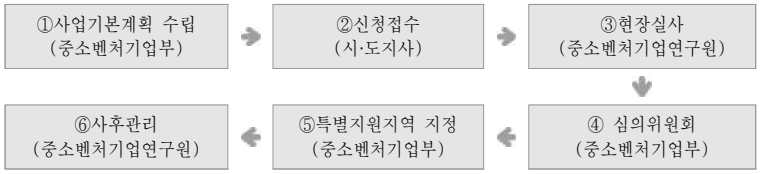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35 (메일) mjkop99@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전화) 044-204-7265 (메일) koren@korea.kr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혁신연구실
(전화) 02-707-9859 (메일) kimhj@kosi.re.kr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전화) 02-6009-3809 (메일) technopark.kr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 간 경영·기술정보 교류·협업 지원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협업계획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협업기업 선정) 생산 · 연구개발 ·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사업화활동 등
- (협업기업 선정) 협업기업 선정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접수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최종선정
  - * 지원필요성(협업추진 필요성 및 협업목적, 사업추진의지, 협업체구성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협업활동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 (협업지원사업) 서류검토→현장평가→심의위원회→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기업의 안정성,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협업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필요시)→최종선정

* 지원필요성(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지원필요성), 계획의 적정성(사업목표의 구체성, 협업추진 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구비서류(청렴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76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 042-331-0563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2 편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 금융 지원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3부 ▸ 인력 지원
제4부 ▸ 판로 지원
제5부 ▸ 수출 지원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 소상공인
제2부 ▸ 전통시장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 기타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 1

창업기업 지원

제1장 ▸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제2장 ▸ 창업저변 확대
제3장 ▸ 창업지원 인프라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예비창업패키지
1-2 초기창업패키지
1-3 창업도약패키지
1-4 재도전성공패키지
1-5 창업중심대학
1-6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7 팁스(TIPS)
1-8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1-9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1-10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11 K-스타트업센터(KSC)
1-12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1-13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1-14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1-15 청년창업사관학교
1-16 글로벌창업사관학교
1-17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1-18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1-19 아기유니콘육성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992명 내외 (모집분야) 일반, 특화(여성, 소셜벤처)	(지원규모) 960명 내외 (모집분야) 일반, 특화(여성, 소셜벤처, 사내벤처)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프로그램)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 (멘토링)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960명 내외
- 지원금액 : 629.77억원(정부안)
- 주요 사업절차

예비창업자 선발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전담·전문 멘토링
일반분야, 특화분야(소셜벤처, 사내벤처, 여성)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BM 고도화, MVP 제작, 후속 연계 등	⊕	예비창업자의 경영·기술 자문을 위한 전담·전문멘토링 지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가점 증빙 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상담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전화) 044-410-1831, 1832, 1804, 1806, 1807, 180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 자격 모집공고 내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혁신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BM(Business Model) :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모형

MVP(Minimum Viable Product) :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한 제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595개사 내외	(지원규모) 59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규모 : 5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548.6억원(정부안)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상담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2, 1834, 1838, 1841, 1842, 1845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개요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및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유형	①일반사업화, ②대기업협업	①일반사업화, ②대기업협업 (신설) ③융자병행, ④투자병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지원조건 : 4개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우대사항 :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상이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일반사업화)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진출 등) 지원
  - (대기업 협업)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
  - (융자·투자 병행) 일반사업화 지원 사항에 추가적으로 융자 또는 투자 병행 지원
- 지원규모 : 373개사 내외(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금액 : 예산 592억원

＊ '23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406개사, 선정지원기업 394개사, 평균지원금액 1.2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지원유형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지원유형별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지원유형에 따라 심사·평가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일반사업화 기준)

* 지원유형(융자병행, 투자병행)에 따라 추진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1~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 (www.k-startup.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전년도 사업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모집마감)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지원유형 4개 중, '일반사업화', '융자병행' 유형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2개 유형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개요

사업 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 발굴 및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구분	- 일반형, IP전략형, 기업발굴형	- 일반형, IP전략형
신청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 <삭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 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IP전략형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일반형"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④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旣)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 협약기간 약 8개월 내외
IP전략형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외 추가로 지식재산컨설팅 제공 *(지식재산컨설팅) IP전략수립, 기술적 문제해결등을 통한 IP 기술 제품화, 특허 권리확보 등 지원

● 지원규모 : 282명 (일반형 262명, IP전략형 20명)

● 지원금액 : 최대 15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평균 6천만원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구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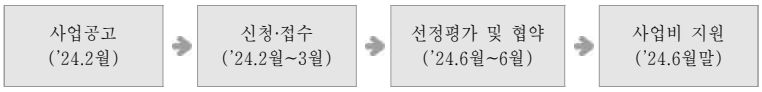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5~6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1, 63, 66, 69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신청기업 외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력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개인기업의 폐업도 폐업이력으로 인정되나요?

A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의 6에 따름

성실경영평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3조에 따름

창업중심대학

사업개요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과 대학생·교수 등 대학발 창업기업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업력별(예비, 초기, 도약) 지원	대학발 창업기업과 지역 산업 기반 창업기업을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까지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창업중심대학별 상이(모집공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글로벌 진출, 민간협력,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창업중심대학 현황 : 수도권(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
- 지원규모 : (예비)창업기업 75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67,475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사업 확장 및 출구 전략, 팀(기업 구성원) 역량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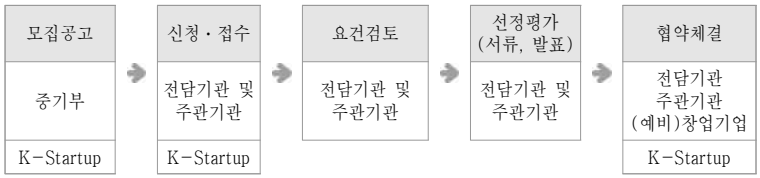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2, 7956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1, 181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초기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모집마감'에서 '창업중심대학'으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창업중심대학 소속의 대학생, 교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부터 스케일업이 필요한 도약기업까지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Q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일 경우 희망하는 창업중심대학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23.12월 기준) 창업중심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창업중심대학은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으로 운영중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개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초격차 5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지원대상

-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10대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신규 217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연계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개방형혁신	•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투자유치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1분기 중(예정)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시장분석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개발역량 및 기술 고도화 계획, 비즈니스 성장전략, 기업 건전성 및 핵심기술 인력구성 등 종합 평가

처리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의처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1~7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스타트업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본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 지원이 보장 되나요?

A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지원이 보장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해 당해연도의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예시1) 1차년도 1.7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총 4.7억원

* (정부지원금 예시2)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1억원, 3차년도 1.5억원 총 4.5억원

Q 본 사업에 선정 시 사업 수행기간인 3년보다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나요?

A 창업기업이 최소 1차년도의 사업을 수행 완료하고, 3년의 사업화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을 졸업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기업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A, 상장, 매출·투자 특정 정량 성과 달성 등

Q R&D과제와 동시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서, R&D과제와 동시수행을 신청·수행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팁스(TIPS)

사업개요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 자금 최대 5억원(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글로벌팁스 지원 트랙 신설

지원대상

- (프리팁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딥테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받은 창업기업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포스트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①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②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TIPS) 성공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신규고용 20명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 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프리팁스(’24년 50개사 내외)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10개월)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24년 872개사 내외)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10개월)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딥테크팁스의 경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3억원 이상)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포스트팁스('24년 83개사 내외) :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 지원(18개월)

신청·접수

- 공고(예정)시기 및 신청방법
  - (팁스) 1월 통합공고 예정이며, 상시 접수 방식으로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2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글로벌팁스) 3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평가 주요 내용 :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
- 추진절차
  - (프리팁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발표평가 → 현장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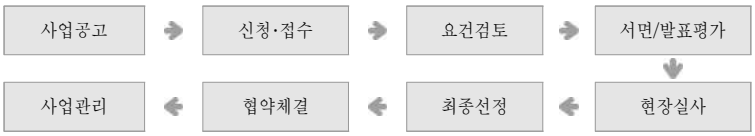

– (팁스) 신청·접수 → 운영사 추천 → 요건검토 → 발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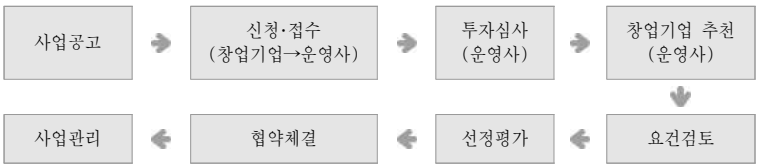

– (포스트팁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발표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22 / 02-2039-1308, 1354
- 한국엔젤투자협회(연계사업팀) : 02-3440-7419
- K-Startup(www.k-startup.go.kr) 또는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개요

기업과 스타트업이 양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포머(Platformer)로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신청제외 대상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선정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 대상 협업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024년 1·2분기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아이디어 혁신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 이해도, 보유역량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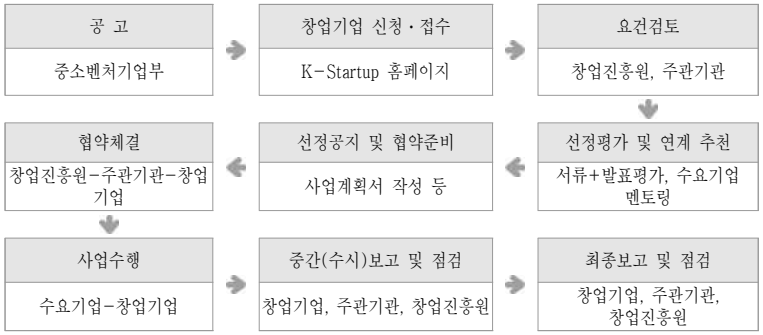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4-204-7671, 7296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15, 1716, 17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ESG분야(환경, 사회), 4차산업 분야(디지털전환, 인공지능) 스타트업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

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②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자율제안형 프로그램 스타트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스타트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요기업 별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예선-본선-결선 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협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용어 설명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POC(proof of concept) :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

MVP(Minimum Viable Product) : 최소 기능 제품,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최소한의 기능(features)을 구현한 제품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사업개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 국적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지원조건 : 신산업 분야 딥테크 분야*

  * (The Industrial Field) ①eCommerce & Retail, ②ESG & Green Tech, ③Food Tech & Agri Tech, ④Healthcare & Bio, ⑤IT & Software, ⑥Mobility & Robotics, ⑦Manufacturing & Device, ⑧Metaverse & Contents

신청제외 대상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개인 사정, 비자발급 등의 문제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① (사업화 지원 : 15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액셀러레이팅)** 각 스타트업의 국내 비즈니스 강점(고가능성 요소)을 극대화하고,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액셀러레이팅 지원(Localization, Pivot 등)
- **(1:1 전문가 멘토링)** 참가팀에 대한 빠른 진단 후 성장포인트 고도화 멘토링 제공
- **(매칭 & 미팅)** 참가팀들이 파트너쉽, 계약, MOU, 초기 세일즈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대·중·소 기업들과 파트너링 기회 제공
- **(Meetup)** 국내 주요 민간 Meetup, Demoday에 전담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참여하여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에 밍글링 지원
- **(컨설팅·세미나)** 국내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사업화, 계약, 세무, 법·제도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세미나 제공(정기/비정기)
- **(액셀러레이터별 특화 프로그램)** 대·중소기업 PoC, Open Innovation 등 액셀러레이터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② (정착지원 : 헬프데스크) 기초 행정, 법인·비자·생활편의 관련 행정지원,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 **(비자 취득 지원)**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준비비자(D-10-2) 지원
- **(계좌개설 지원)** 원활한 지원금 집행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인/법인계좌 개설 지원
- **(컨설팅·세미나)** 법인설립, 세무/회계, 특허/IP, 노무 등 한국 내 정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교육, 1:1 컨설팅 지원
- **(코디네이팅)** 해외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 시작 전 선정과정(입국 제반사항 준비 지원)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기초 행정, 생활편의 등) 문의 대응 지원

③ 한국기업·투자자 미팅 기회

④ 한국인 인턴 지원

⑤ 사무공간(판교) 지원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6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4월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홈페이지 (https://www.k-startupgc.org/) 참조
- 제출서류 : 사업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국내 진출 계획, 팀 등
- 추진절차 :

참가 신청		평가·선정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후속지원
신청접수	→	서류, 발표 평가를 통한 40개팀 선정	→	40개팀에 대한 1차 보육지원	→	20개팀 최종 선발	→	후속지원
4월		5~6월		8~11월		12월 초		차년도 1~4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전화) 044-204-7643, 044-204-7651,
  (이메일) chc12@korea.kr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전화) 044-410-1836, 1882, 1886
  (이메일) ghj@kised.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해외시장검증(GMEP)과 해외실증(PoC)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해외시장검증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여비 등 지원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

케일업 지원

- 지원규모 : (해외시장검증) 110개사, (해외실증지원) 30개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4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발표평가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서류/발표평가	→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4-204-7650, seojinair@korea.kr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2-2039-1629, 1735, dream2@kised.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공고마감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공고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Q&A

Q 해외시장검증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최소 1인 이상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반드시 특화 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 해외시장검증(GMEP)과 해외실증(PoC)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당해년도 동시 진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해외실증지원(PoC) : 해외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K-스타트업센터(KSC)

사업개요

국가별 혁신거점에 설치된 8개국 K-스타트업 센터에서 현지시장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국가

- 8개국(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스웨덴,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 (거점형)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 (프로그램형) 미국, 프랑스, 스웨덴,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핀란드, 베트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투자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지원내용

- 맞춤형 현지화 프로그램

– 초기정착 지원 : 사무공간 입주지원(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 법률·세무·회계 등

자문 및 법인설립 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바이어·사업화 파트너 발굴, 마케팅·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 및 IR·데모데이 지원
- 성과창출 지원 : VC 매칭 및 글로벌 AC 전문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연계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KPI워크숍 : 참가기업-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목표 및 세부 활동계획 등 현지진출 KPI 최종 수립
- 진출준비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를 매칭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현지 진출전략 최종 점검 및 수정
- 현지 프로그램 : 8주 동안 참여 창업기업의 KPI 달성을 위해 BM 고도화, 협력 파트너사 발굴, 투자사 매칭 등 현지 밀착 지원
- 성과발표회 : 국가별 우수 창업기업의 성과확산 및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

신청·접수

● (거점형)상시모집, (프로그램형)'24.3월

제출서류

● 국·영문 사업신청서 등

처리절차

● 거점형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ems.or.kr)
서류 심사/ 현지 거점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C 현지 거점
결과 통보
선정 또는 지원제외

- 프로그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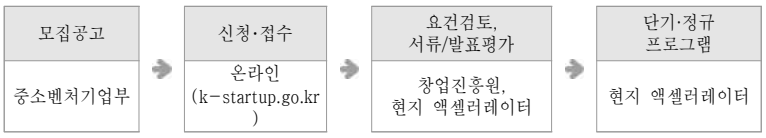

* 위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 145개사 내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781, 9683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 02-2039-1652, 1686
- k-startupcenter.org 또는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형은 창업진흥원 위탁을 통해 입주공간 지원 없이,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만 제공하며, 거점형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하여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입주공간, 법인설립, 법률·회계·마케팅 자문 등의 현지정착 지원을 종합 제공합니다.

용어 설명

엑셀러레이팅 :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 노하우, 시장 접근법, 투자유치를 위한 IR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개요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서비스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는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아이템 개발·고도화, 사업모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글로벌 기업 서비스 : 매칭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유 솔루션 지원, 비즈니스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해외진출 연계 등 지원(기업별 상이)
  * 글로벌 기업 참여 현황 : ('23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평균 1.3억원 ('23년 기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3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요건 적합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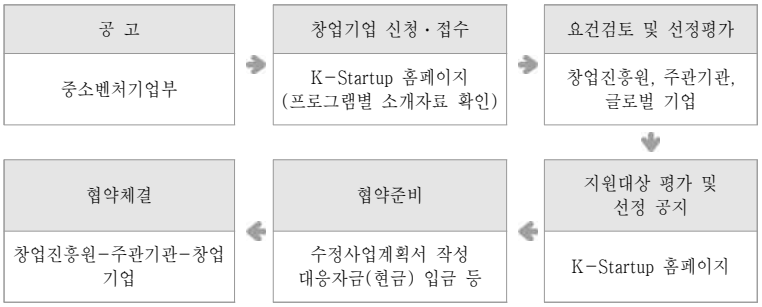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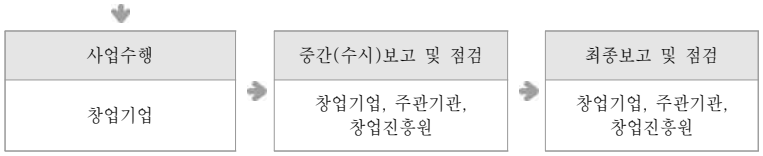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전화) 044-204-7651, (이메일) chc12@korea.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전화) 044-410-1720, 1726, 1762, (이메일) ggh@kised.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글로벌 기업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솔루션 제공(무상, 할인 등), 기술 전문가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해외 판로개척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글로벌 기업마다 제공 서비스가 상이하니 모집공고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사업 아이템에 적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지원조건 :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팀)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이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28명(팀)
- 지원금액 : 약 13.4억원(평균 48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공공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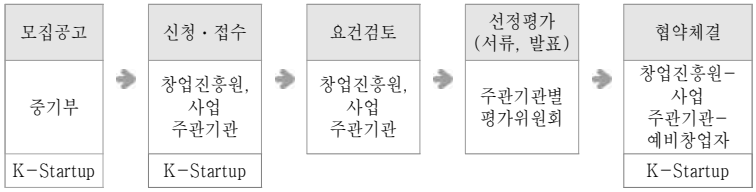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모집마감'에서 '공공기술'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공공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 공공기술이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말합니다.

Q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권리권, 노하우, 기술자료 등을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도입)받아 활용할 계획을 신청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Q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도입)받아 창업을 실행할 예정인 자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지원조건 : 기업을 창업(법인, 개인)한 이력이 없는 자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생애최초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별로 상이)
- 지원규모 : 78명(팀)
- 지원금액 : 약 36억원(평균 약 46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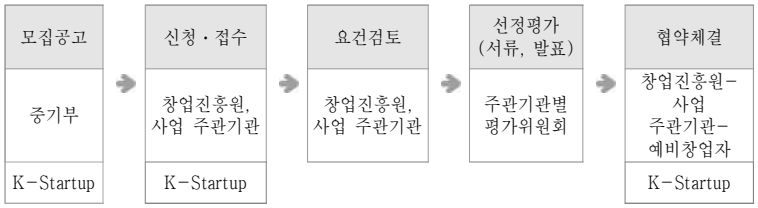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모집마감'에서 '생애최초'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신청자격 상 기업을 창업(법인, 개인)한 이력이 없는자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만29세 이하 청년으로 생애 단 한번도 사업자를 신고하여 사업을 한 이력(경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대표로 사업을 계획중인데, 복수의 공동대표자 모두 만 29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의 나이조건이 만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자등록(개시) 시 공동대표자 포함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사업 신청시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총 4개 기관입니다. 공고문 내 주관기관 소개자료 등을 확인하시어 생애최초 창업과정에서 함께할 주관기관 파트너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915명(개사)	850명(개사)
지원예산	845억원	793억원
선정절차	3단계(서류→발표→심층)	2단계(서류→발표)
민간주도형	4개소(경기북부, 대전, 제주, 부산)	5개소(경기북부, 대전, 제주, 부산, 미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지원조건 : 만 39 이하인 자
- 우대사항 : 초격차·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우선 선발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공간) 창업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全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지원규모 : 850명(개사)
- 지원금액 : 79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2주(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4년 사업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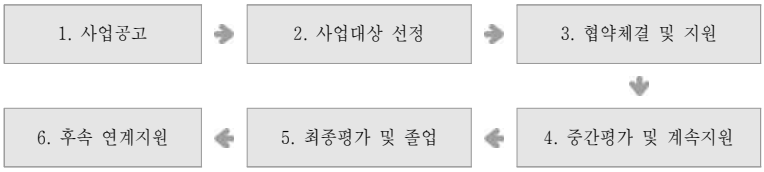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1,7955
  (이메일) spbaek5@korea.kr, laplace663@korea.kr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 (안산, 구리)	(안산) 031-490-1351, (구리) 031-554-2784~8
	서울	02-2130-1431~3, 1435~6
	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6, 9268~9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2~9
	충북(청주)	043-903-9357~8
호남권 및 제주	광주	062-250-3031~2, 303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61-331-8708
	제주	064-759-9649
영남권	대구	053-656-8176~8
	경북(경산)	053-819-5053
	부산	051-305-9930~3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보기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준비부터 글로벌 혁신성장까지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D.N.A.분야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내용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5천만원), 글로벌D.N.A.교육,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인바운드)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1.5억원), 글로벌 진출 특화프로그램,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아웃바운드)
지원예산	108억원	138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지원조건 :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대표 연령 무관)

신청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

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 내용
  - (국내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별·진출단계별 글로벌 진출 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제공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 제공
  - (해외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직접 진출 희망(예정) 국가별 현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지원) 최대 1.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지원규모 : 60명(개사)
- 지원금액 : 13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신청 관련 기타 증빙서류 등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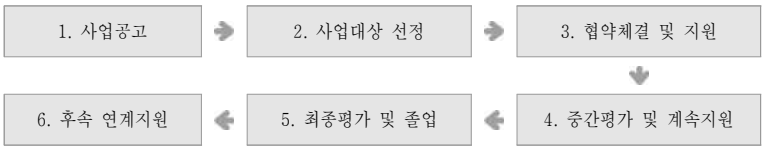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044-204-7951,7955
(이메일) spbaek5@korea.kr,laplace663@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02-6735-1334, (이메일) ljh@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보기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사업개요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학력·전공 무관)

신청제외 대상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총 4단계에 걸쳐 10개월 간 집중 운영

– 인공지능 초급과정 :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 공통과정 운영

– 인공지능 특화기초 :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심화 학습을 위한 기초이론

– 인공지능 특화심화 : 데이터 엔지니어링(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처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머신러닝·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이해)

– 산업 융합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캐글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벤처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지원규모 : 200명(대면과정 100명, 비대면 과정 100명)
- 지원금액 : 27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상식평가 및 역량 면접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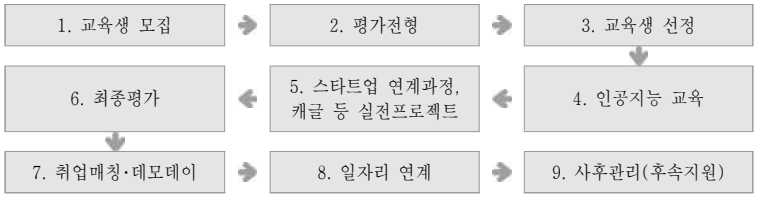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044-204-7951,7955 (이메일)
  spbaek5@korea.kr,laplace663@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2-6735-1343~4 (이메일) homming@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보기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개요

스타트업에 해외 개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베트남 청년 기술인력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한 양국 관계 증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베트남 내 이공계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주한 베트남 이공계열 대학 유학생(베트남 국적자)
- 우대사항 : SW 계열 전공자, 한국어 가능자

신청제외 대상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SW 분야 실무 인력 양성 교육(5개월) 및 한국 취업 비자(E-7) 취득 지원

– SW 분야 교육 : 스타트업에서 수요가 높은 IT 분야(Web, App, Back-End) 교육 및 기업과 연계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 실시

– 취·창업 교육 : 취·창업, 비즈니스 관련 교육 지원을 통한 국내 기업 취업, 한국 기업문화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 : 집중교육 대상자 및 희망자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 제공

- 지원규모 : 200명(베트남 현지 160명, 주한 베트남 유학생 40명)
- 지원금액 : 16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서류검토 → SW개발 상식테스트 → 심층면접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SW 관련 분야 역량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2,7955
  (이메일) dlrlxor135@korea.kr, laplace663@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2-6735-1343~4 (이메일) homming@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아기유니콘육성사업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 (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①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②연계지원 - 특별보증(기보, 최대 50억원), 정책자금 (중진공, 최대 100억원) 등 우대 및 가점 ③ 글로벌진출지원 - 해외 VC 대상 글로벌 IR, 글로벌 시장조사 지원 등	①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②연계지원 - 특별보증(기보, 최대 50억원), 정책자금 (중진공, 최대 100억원) 등 우대 및 가점 ③ 후속지원 - 해외진출 지원, 이차보전 등 연계사업 (검토중)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K-유니콘 홈페이지(k-unicorn.or.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K-유니콘 홈페이지(k-unicorn.or.kr)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지원조건 : 자부담 50%

● 우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제외 대상

▸아기유니콘 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공고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2.8.1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② 연계지원

– 특별보증(기보, 최대 50억원), 정책자금(중진공, 최대 100억원) 등 우대 및 가점

③ 후속지원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컨설팅,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 연계

사업(검토중)

- 지원규모 : 약 50개사
- 지원금액 : 시장개척자금 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또는 k-unicorn.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창업기업확인서, 투자유치내역확인서 등
- 선정평가 : (1차) 요건검토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술·사업성 평가 등
- 추진절차 :

공 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1차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www.k-unicorn.or.kr	기술보증기금
↓		
최종선정공지	3차 평가	2차 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단 등)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전화) 044-204-7851, (이메일) bhmoon@korea.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기술보증기금 051-606-7671, 7655, 7694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498, 1394, 132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아기유니콘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로) k-unicorn.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2-1 청소년 비즈쿨

2-2 창업에듀

2-3 도전! K-스타트업

2-4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2-5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2-6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2-7 창업지원포털(K-Startup)

청소년 비즈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
- 사업주체 :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 창업진흥원, (운영) 학교 및 학교 밖 센터
- 사업예산 : 63.95억원
-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약 10개월 (운영기관당 최대 3년까지 운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방법 :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비즈쿨 캠프 및 솔루션,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운영기관 규모		• 423개 (운영형 338개 + 체험형 85개)	• 423개 내외 (운영형 212개 + 체험형 211개)
운영기관 협약기간		• 2021~2023년	• 2024~2026년
운영기관 예산규모		• 일반기관 평균 9.9백만원 • 거점기관 평균 60백만원	• 일반기관 평균 14백만원 • 거점기관 평균 91백만원
지원 내용	연합 프로그램	• 거점기관이 연 3회 이상 주최하며, 일반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	• 거점기관이 연 3회 이상 주최하며, 일반기관은 1회 이상 의무 참여
	비즈쿨 솔루션	• 5개 대기업, 1개 부처, 1개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운영	• 3개 내외 대기업, 9개 내외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운영
	비즈쿨 페스티벌	• 운영기관, 대기업,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개최	• 운영기관, 대기업,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개최하며,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메이커데이'와 공동 개최
고교학점제 인정도서 개발		• 고교학점제 TF를 구성하여 인정도서 개발 추진	• 교육부 '협업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인정도서 개발 및 추진

운영기관

- 모집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모집규모 : 총 212개 내외 (모집 시 '일반기관'과 '거점기관'으로 구분하여 모집)

구 분	역 할	규 모	예 산
일반 기관	• 교재활용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운영기관 공통업무 및 거점기관 추가업무 수행 시 학생 동원 등의 협조	197개 내외	평균 14백만원
거점 기관	• 운영기관 공통업무 및 지역 캠프·IR 개최, 일반기관과의 연합프로그램 운영, 일반기관 담당자에 대한 멘토링 등 추가업무	15개 내외	평균 91백만원

- 모집기간 : '24.1월 중순 ~ 1월 말 (약 2주)
- 모집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운영 계획서 1부, 모집대상 자격 충족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절차 : 일반기관은 서면평가, 거점기관은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항목 : 사업 의지, 인프라 구축 적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정량·정성으로 평가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953)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51~4)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21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1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모집마감 > 2021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창업에듀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포털로 900여개의 창업강좌 서비스를 무료 제공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내용

-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창업에듀 이용자의 온라인 창업교육 편의성 강화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창업교육 콘텐츠 900여개를 무료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5, 195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도전! K-스타트업

사업개요

범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출신과 산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과 창업 후속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저변을 확대

* '24년 참여부처 :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방사청, 특허청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자(팀)

※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 이력은 창업 업력에 기산하지 않음

신청제외 대상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입상 제외)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내용

- 상금 (총 14.1억원, 20팀(최대 3억원))
-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20점)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부처 통합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공고 → 예선리그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예선리그별 제출서류
- 추진절차 : 부처별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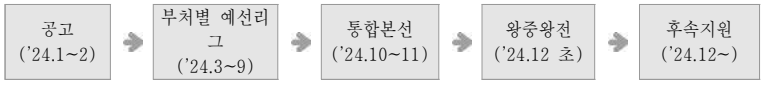

< '24년도 대회 운영 내용 >

구분	'24년
예선리그	혁신창업리그(일반, 클럽), 학생리그(도약, 유학생), 연구자리그, 국방리그, 스포츠리그, 관광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신산업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	210팀 * 각 예선리그별 통합본선 진출 TO 상이
왕중왕전 진출	3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5팀) ※ 최종 수상 2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0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1, 1717, challengeK@kised.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도전! K-스타트업' 검색
  - (홈페이지) 상세보기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개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전시회 수	전시회 3개	전시회 4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제외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초과 창업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전시 준비 사전 교육 : 전시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선배기업, 마케터 등과 전시 준비 노하우 전수 등
  - 전시회 별 피칭 고도화 : 피칭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서면 피칭 자료 검토, 예선 제출용 영상 촬영 및 리허설 진행 등
  -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 현지 투자자, 바이어와의 매칭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 등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전시별로 상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전시별로 상이(모집공고 확인)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9. 171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사업개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제출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처리절차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 → 4대 사회보험 신청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 044-410-1653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참조 (www.startbiz.go.kr)

Q&A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소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사업개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24.3.15.~)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의신청심사	창업진흥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 (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서류)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폐업·휴업사실증명) 간소화
- (신청 및 처리기간) 상시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내 처리
-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 확인서 신청 불가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공공구매팀) : 044-410-1774~82
-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 참조

Q&A

Q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순 없나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창업지원포털(K-Startup)

사업개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① 창업준비(대국민)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⑤ 재창업(재창업자) 등 사용자 정보 기반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등)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제공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대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 044-410-1652~9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 참조 (www.k-startup.go.kr)

Q&A

Q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K-Startup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K-Startup을 통해 사업공고 및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K-Startup 회원가입이 필요하오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Q K-Startup 정보 및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가이드가 있나요?

A K-Startup은 창업사업, 교육, 입주공간, 멘토링·컨설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며, 그 외 연계 서비스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가이드도 제공중입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K-Startup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K-Startup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K-Startup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일반 매뉴얼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3 장

창업지원 인프라

3-1 창조경제혁신센터
3-2 창업존 운영
3-3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3-5 메이커 활성화 지원
3-6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개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 상이

신청·접수

- '24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82, 189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 (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61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창업존 운영

사업개요

Data·Network·AI 등 미래 유망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등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입주공간 지원 : 120여개사 내외
- 지원금액 : 44.82억원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전화) 044-204-7675, 7677. (이메일) bcmin@korea.kr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전화) 044-410-1888. (이메일) dada0811@kised.or.kr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존팀) :
(전화) 031-780-9061, 9062, (이메일) sy.brentkim@ccei.kr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개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 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분 야	내 용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 '24년 연중 수시*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문의처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925, 1921
-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현황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인천	남동구	032-726-3883	충남	당진시(읍내동)	041-356-8748
강원	춘천시	033-244-2255		서산시, 서천군	041-660-1327 041-951-1326
	원주시	033-769-1903~4	전북	익산시	063-851-7480
울산	동구	052-209-1510		전주시	063-711-2153
	울주군	052-277-1996		군산시	063-446-6700
경남	진주시	055-772-3610	광주·전남·제주	광주 동구	062-610-9520
	양산시	055-380-9656		전남 목포시	061-280-7499
	김해시	055-310-9260~1		제주 서귀포시	070-7732-0202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	대구·경북	달서구 (계명대)	053-643-7994
	성북구	02-941-7257		수성구	053-784-8261
				달서구 (계명문화대)	053-589-7932
경기	성남시	031-782-3018		칠곡군	054-973-9604
				경산시	053-856-3840
	고양시	031-936-7485	충북	청주시(상당구)	043-254-8666
	안양시	031-8045-6715		청주시(서원구)	043-217-1312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개인데스크, 편의시설 등) 제공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워킹	•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 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4개소 내외(45.98억원)

문의처

-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 1930, 1925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지역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서초구	02-2055-2023	광주 전남 전북	목포시	061-280-7499
	성북구	02-2241-3984		동구	062-610-9520
	강남구	02-3440-7467		여수시	061-659-7798
	강남구	02-445-8005		담양군	061-381-5800
	금천구	02-6670-0021		전주시	063-281-4129
	마포구	02-335-7017	대구 경북	중구	053-428-9904
	마포구	070-7727-4112		중구	070-8277-8907
경기	의왕시	031-345-2370		수성구	053-784-8261
	용인시	031-270-9786		달서구	053-589-7933
	용인시	031-890-7832		포항시	054-223-2244
	수원시	031-546-6416		영천시	054-339-3356
	안양시	031-8045-6716		문경시	054-552-2322
	수원시	031-204-1070		안동시	054-840-7061
	부천시	032-310-3182	부산 울산 경남	창원시	055-267-2311
	고양시	031-960-7869		김해시	055-310-9250
	의정부시	031-850-5817		창원시	055-247-9388
인천	연수구	032-216-0091		해운대구	070-8031-8032
	남구	032-725-3202		사하구	051-201-0191
대전 충남 충북	유성구	042-864-5111		진구	051-818-0211
	청주시	043-299-1052		해운대구	051-749-6281
	천안시	041-589-0703		남구	052-710-3098
강원	춘천시	033-244-8715			
	강릉시	033-650-3362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캐주얼 창업중심의 메이커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19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 지원조건

① (공간확보)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일 것

-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 제출 필수

② (대응자금 투자)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 우대사항 : 동일 권역(17개 시·도 기준) 내 컨소시엄 구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6억원

-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 구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 예산조정 가능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①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②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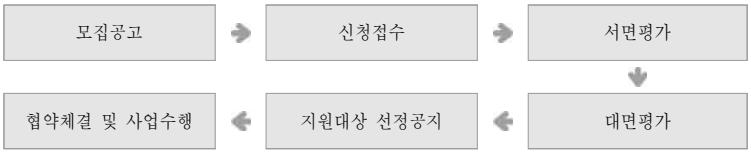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누리집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Q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엇인가요?

A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이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컨소시엄(대표 1개+협업 2개 이상)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및 컨설팅, 창업사업화 지원 등 고도화된 제조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제조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용어 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사업개요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예비)창업자에 사업 공간, 기술·경영 멘토링 등 지속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보육센터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기술부문	기술개발,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 해결(전문가), 기술이전 및 평가 등
경영부문	재무·세무·회계 교육지원, 경영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 지원, 특허지원, 경영애로 해결(전문가),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 등

구 분	세부 내용
행정부문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 사무장비(팩스, 복사 등) 지원, 회의실, 휴게실 제공, 입주·졸업기업 간 네트워킹, 행정애로 해결(전문가) 등
자금부문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 투자(IR) 연계 지원 등

- 지원규모 : 전국 258개 창업보육센터, 6,100여개 창업기업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예비)창업자 연중 수시(창업보육센터별로 상이)
- 신청방법 :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www.smes.go.kr/binet), 창업보육센터별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전화) 044-204-7667, (이메일) wjddus09@korea.kr
- 한국창업보육협회 : (전화)042-346-9621
(chslee@kobia.or.kr)
- 자세한 내용은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
(www.smes.go.kr/binet)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경로) bi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요모집공고 → 입주기업모집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제 2 부

재도전기업 지원

제4장 ▸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4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재도약지원자금
4-2 진로제시 컨설팅
4-3 회생 컨설팅
4-4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4-5 구조혁신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신사업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재창업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A, B, C등급)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재창업자금**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사업전환계획 또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등급)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재창업자금** **• < 삭 제 >**
지원규모	**사업전환자금** : 2,500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980억원 **재창업자금** : 750억원	**사업전환자금** : 3,125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1,193억원 **재창업자금** :1,000억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전환자금	①「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아래의 유형(① ~ ⑦) 해당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협약은행(10개)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 : 상담·접수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구분	지 원 요 건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125억원
구조 개선 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 • 지원규모 : 1,193억원
재창업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거치기간 종료후 1년 연장 평가 • 지원규모 : 1,00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 추진절차 :

– 사업전환자금

– 구조개선자금

– 재창업자금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사업전환 :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구조개선 : (전화) 044-204-7481 (메일) mrjung13@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재창업 : (전화) 044-204-7625 (메일) ghlee999@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 사업전환 : (전화) 055-751-9703 (메일) ksb91@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구조개선 : (전화) 055-751-9923~6 (메일) gjh7472712@kosmes.or.kr

– 재창업 : (전화) 055-751-9622 (메일)

hyein@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개요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구분	'23년	'24년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분야 : 최대 2개(세무·노무·법무 中) 지원한도 : 240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분야 : 최대 3개(세무·노무·법무) 지원한도 : 360만원
신청 접수	'23. 2월~	'23. 12월~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초진로제시 컨설팅)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

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 분석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 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사업정리에 필요한 3가지 전문분야* * 세무/노무/법무분야	분야당 1~2MD	총 360만원 (분야별 120만원)

- 지원규모 : 355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자부담율 1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홈페이지(www.mssmiv.com)에서 신청서 등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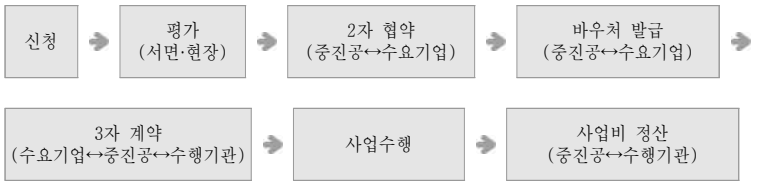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yeongi2910@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6 (메일) kjc0902@kosmes.or.kr

회생 컨설팅

사업개요

-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절차 진행 등을 지원(워크아웃의 경우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비용 지원)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워크아웃 컨설팅 > 공동관리절차 기업 限	< 워크아웃 컨설팅 > 공동관리절차 + 단독관리절차 기업
신청접수	'23. 2월~	'23. 12월~

지원대상

- 회생 컨설팅 : ①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②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제휴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개인회생 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기본중위소득 125% 이상인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완료보고서 제출 전)인 기업
- ▸최근 5년간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회생, Pre-회생, 개인회생) 회생 신청부터 회생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구분	내용
재무·세무	■ 회생신청서 ■ 심문답변서 ■ 채권목록표 ■ 시부인표 ■ 회생계획안 ■ 2차 집회서류 ■ 회계세무 자문내용 ■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채권자+법원 연결 역할) * 조사위원 불선임 : 관리인 보고서 작성(조사위원 보고서 수준)

– (워크아웃) 워크아웃 관리절차 개시 및 연장에 필요한 실사 및 자구계획 수립 지원

● 지원규모 : 170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자산 규모에 따라 자부담율 차등 적용(1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홈페이지(www.mssmiv.com)에서 신청서 등 확인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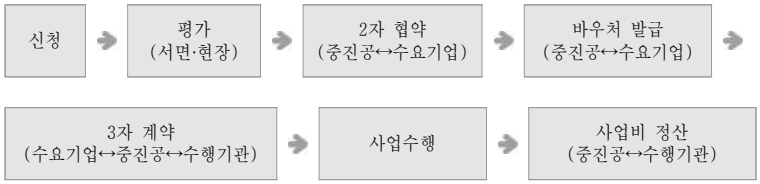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yeongi2910@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6 (메일) kjc0902@kosmes.or.kr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사업개요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 지원유형 신설 >	•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 * 벤처캐피탈(V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투자자가 구조개선 목적으로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을 하는 경우
	•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	• 협업 금융기관에서 당해 신규자금 대출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 제외
지원규모	• 융자예산 총 677억원	• 융자예산 총 745억원

지원대상

● 아래 유형❶~❷에 해당하는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구분	유형 ❶ 채권은행 연계형	유형 ❷ 투자자 연계형
지원대상	• 중진공 및 협약은행*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은행(총 10개) ** 당해 협약은행 신규대출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제외	•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 * 벤처캐피탈(V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투자자가 구조개선 목적으로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을 하는 경우

구분		유형 ❶ 채권은행 연계형	유형 ❷ 투자자 연계형
자격요건	위기징후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단,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기업 제외)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업력/형태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신용공여액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 100억원 미만인 기업	
	권리침해/체납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 세부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중진공, 채권은행·투자자 공동 금융지원(만기연장, 신규대출, 지분투자 등)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구조개선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채권은행·투자자의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 지원규모 : 융자예산 총 745억원 예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중진공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각

관할 위기지원센터 상담

- 추진절차 : 협약은행·투자자, 중진공(지역본·지부), 위기지원센터 상담·추천 → 사전검토 → 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사전협의 → 현장실사 → 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최종협의 → 지원결정 → 기업지원 → 이행점검

절 차	내 용	비 고
상담·추천	• 경영애로 상황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중진공(기업개선팀)에 추천 – 경영애로 현황, 업력, 기업형태, 신용공여액, 신용위험등급, 조기경보등급, 권리침해·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투자자 위기지원센터
사전검토	• 추천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 구조개선 지원 필요성, 중점지원업종(혁신성장·그린·지역특화) 해당여부, 매출·이익 등 성장 가능성, 재무 특이사항 등	중진공 (기업개선팀)
금융기관 사전협의	• 협약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 채권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은행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가능성 사전협의 실시	중진공 (기업개선팀)
현장실사	•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 수립(심층) 및 지원타당성 평가 – 지원예정금액 등을 기준으로 구조개선진단·경영개선계획 수립 대상기업 구분 후 정상화 가능성을 중점 점검	중진공 회계법인
금융기관 최종협의	•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협의 – 현장실사 결과 및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내역을 협약은행 및 투자자에게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여부를 최종 협의	중진공 (기업개선팀)
지원결정	•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 –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투자 등	중진공 (기업개선팀) 협약은행
기업지원	• 지원결정 내용 실행 –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투자계약 진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투자자
이행점검	• 정상화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	회계법인 진단전문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1 (메일) mrjung13@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기업개선팀
  (전화) 054-751-9923~6 (메일) gjh7472712@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지

- 공지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홈페이지) 상세보기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구분	'23년	'24년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업력 3년이상	삭제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디지털·노동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도박, 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 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구조혁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기업 수요기반 심층 컨설팅 지원(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일자리전환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금융, 세제, 직무전환, 전직 등 지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사업전환자금 융자,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연계 등
- 지원 규모 : 구조혁신 진단 1,0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1,04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분기 내 사업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구조혁신지원사업(www.kosmes.or.kr/3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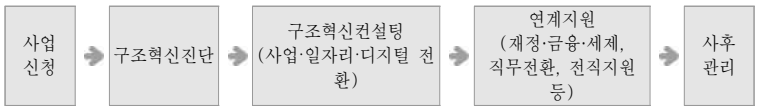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전화) 055-751-9702 (메일) hwangsh@kosmes.or.kr
-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제 3 편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 금융 지원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3부 ▸ 인력 지원
제4부 ▸ 판로 지원
제5부 ▸ 수출 지원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 소상공인
제2부 ▸ 전통시장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 기타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 1

소상공인

제1장 ▸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제2장 ▸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제3장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4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 장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1-1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1-2 상권정보시스템
1-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5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6 로컬브랜드 창출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사업참여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교육생
-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적발된 교육생
-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공고를 통해 고지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 등 수행)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과정별로 최대 40~6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론, 실습교육을 전국 5개 전용교육장 중심으로 운영
- 소상공인 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온라인 교육 및 전자도서 대여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9~30
- 기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위탁운영기관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과정별 40~60만원 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Q 소상공인 전자도서관의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대여 한도는 월 4권(전자책 3권, 오디오북 1권)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매월 변동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온택트(On-Tact) :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뜻함

상권정보시스템

사업개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업종별로 입지평가·수익분석·경쟁분석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

- 全국민(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도상 위치를 기반으로 매출, 인구, 소득·소비 등 창업·경영관련 다양한 상권정보 제공

① 간단분석 : 행정동 및 업종에 대한 추정매출, 업소 수, 유동인구 등

② 상권분석 : 선택영역에 대한 요약, 업종·매출·인구분석, 지역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시계열 정보

③ 입지업종 분석

– 입지현황 : 반경 200m내 입지들의 업소 수, 매출 건수, 증감률 정보

– 매출예측 : 15개 주요 업종에 대해 유사 입지 기반 매출 예측 정보

– 입지평가 : 특정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예상 매출

액과 평균을 종합평가

- 업종추천 : 업종·지역별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④ 수익분석 : 목표매출 및 고객 수, 유사입지·업종의 수익분석

⑤ 경쟁분석 :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 평가

* 안전(초록)-주의(노랑)-위험(주황)-고위험(빨강)

⑥ 창업기상도 : 5개 업종에 대해 유동인구·매출액을 기반으로 창업 위험도 예측정보 제공

⑦ 점포이력 : 관심 지역 및 입지에 대한 업소 이력(개·폐업 정보)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헬프 데스크 : 1644-5302

이용방법

- (PC·모바일)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sbiz.or.kr)
  - 향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후 통합 하여 서비스 예정

Q&A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수급처와 갱신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기반 데이터는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20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다른데 최소 월 단위에서 최대 반기별로 갱신되며,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빅데이터 플랫폼은 언제부터 서비스 할 예정인가요?

A 현행 상권정보시스템은 유지하며,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24년도 시범 서비스 운영 후 정식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드립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창업아카데미, 미니피칭대회 월 1회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창업아카데미 연 5회, 미니피칭대회 연 2회
신청접수	23. 3월	24. 2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우대사항 : 경력단절여성, 성실 상환자 등

신청제외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역량강화)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회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 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정책자금)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최대 1억원)
- 지원규모 : 총 500명 내외

- 지원금액 : 196,41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작성),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 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등 신청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선정평가 : 사업화지원금 확정 등 서류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서류심사 시,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성, 발표심사 시, 사업화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
- 추진절차 :

구분	모집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17기	'24.2월	'24.3월	'24.4월	'24.4월 ~11월	'24.4월 ~12월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이메일) bm@sema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개요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민간자금 연계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05개사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10개사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1,000개사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1,333개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1.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지원 세부내용 : 팀빌딩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BM) 고도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팀빌딩) 스타트업, 창작자 등 사업 수행 시 협업할 전문 파트너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과 사업 관련 경영, 마케팅 등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신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10개사
- 지원금액 : 19,986백만원

2,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지원 세부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크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지원규모 : 1,333개사 지원
- 지원금액 : 4,00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중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소상

공인 확인서 등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총 2단계 평가(서류→ 신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자격 요건확인,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 등 확인
- 추진절차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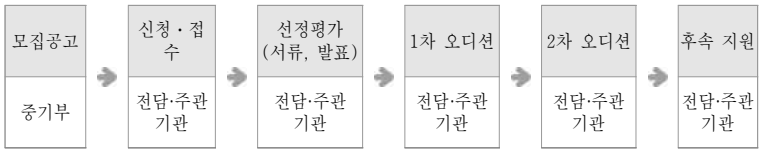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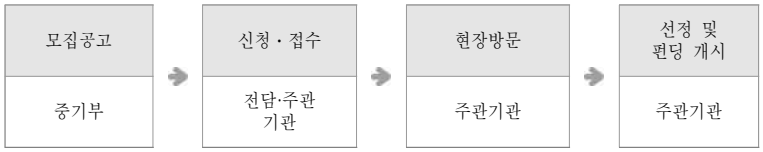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6, 7727, 7737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강한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확인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확인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작자, 스타트업 등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모델(BM)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Q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유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교육,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크라우드펀딩 :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BM(Business Model)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개요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120개사 내외	22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지역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로컬브랜드) 등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개인(최대 4천만원), 협업(최대 7천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인(지역성·성장가능성), 협업 및 브랜드(협업성,성장가능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개인·협업팀) 모집공고
  - (경로) K-스타트업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로컬크리에이터(개인)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가 다른 데 이런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와 다르다면 해당 지역자원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주관기관)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개요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4개팀 내외	8개팀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팀을 구성
- 우대사항 : 지역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로컬브랜드) 등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업간 연계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골목상권 BI 제작, 환경개선·디자인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8개팀 내외
- 지원금액 : 사업화자금 최대 2.5억원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계획, 지속가능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 (경로) K-스타트업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골목상권 창출형과 골목산업 창출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골목상권형은 지역로컬크리에이터간의 클러스터화(3개팀 이상 사업아이템 연계)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며, 골목산업형은 전후방 제조업과의 연결을 집중을 위해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2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2-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2-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2-4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2-5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2-6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2-7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2-8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2-9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2-1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11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90%(국비), 10%(자부담)
- 우대사항 : 간이과세자 등 자부담 무료

신청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 지원규모 : 6,000건 내외
- 지원금액 : 94.8억원

신청·접수

- 공고 : '24년 3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예비창업자) 등
- 선정평가 : 예산 소진시 까지
- 추진절차 :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전문기관		컨설턴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1-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31~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시행 공고
  - (사업 홈페이지) 소상공인컨설팅-사업공고-경영안정·기업가형컨설팅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 접수 페이지는 '24년 3월 공고문 확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
- 지원금액 : 1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3월
  * 연중 상시지원(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 선정평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 추진절차 :

신청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1~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시행 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중위소득 125% 기준 : (2인가구) 4,320,194원,
(4인가구) 6,751,205원 (2023년 기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협업추진주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업 추진주체
- 지원조건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 우대사항 : 청년, 여성 기업 등 정책적 고려대상은 가점우대

신청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반조성, 공동사업, 사후관리
  - (기반조성)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통한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 협업체 초기 정착 및 성장모델 지원
  - (공동사업) 단계별 개발, 마케팅, 장비 등 맞춤형 협업사업 지원
  - (사후관리) 국·내외 온라인(상품개발, 상세페이지, 기획전 등) 및 오프라인 (바이어 상담회, 박람회 등) 판로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 지원규모 : 90개 내외
- 지원금액 : 11,30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1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서류→ 현장평가→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내역 사업별 선정평가 방식은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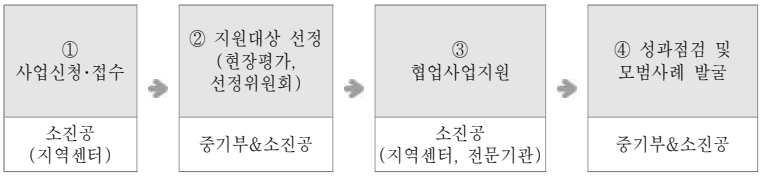
①
사업신청·접수
②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③
협업사업지원
④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부&소진공
소진공
(지역센터, 전문기관)
중기부&소진공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 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363-7922, 792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 공동사업 > 모집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용어 설명

공동사업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고용창출 : 조합에서 채용한 고용인원(4대 보험 중 1개 이상을 가입한 상시근로자)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해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사업구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별도 사업운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통합운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제외 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특화지원센터)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복합지원센터)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공간 등 조성

- 지원규모 : 39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2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함)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방법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 제출서류 : 각 지원센터별 제출서류 문의
- 선정평가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0, 7918, 7911, 7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안내 참고

참고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공인 지원사업 안내 참고

Q&A

Q 지역별 소공인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공인지원센터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과정의 수강 대상은 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근로자, 예비소공인(창업예정자), 소공인 사업장 근로 희망자(취업예정자)입니다.

Q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 신청은 지자체만 가능한가요?

A 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며, 복합지원센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공인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집적지 : 일정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이 아래 기준 이상 모여있는 곳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차지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집적지구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항목	판로개척지원 바우처 단일항목	판로개척지원 바우처 항목 세분화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지원내용

- (바우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항목을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최대 20백만원, 국비 80%)
- (판로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개최 및 입점, 해외 수출 관련 지원, 유통상담회 등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내용
바우처	일반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국내·외 홍보지원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특화	해외특화	• 마케팅 비용, e커머스 입점비 및 판촉비, 미디어컨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물류비 등 그 외 수출에 필요한 지원
판로연계	공동기획전		•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마케팅지원 등
	해외수출		•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 등
	유통상담회		•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로 판로개척 지원 등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Q&A

Q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바우처지원과 판로연계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판로연계지원은 '23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사업 공모시 사업신청서 上 판로연계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Q 소공인 판로개척 바우처 항목 중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內, 바우처 판로지원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바우처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內 바우처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지원

판로연계지원 : 바우처 지원 외 판로연계를 희망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해외수출지원, 유통상담회 등 추가 판로연계지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을 디지털 기술(IoT, AI 등)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축 등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유형	설비자동유형, 공정디지털유형, 클러스터유형	(통합) 개별형, 클러스터형
지원항목	장비 및 재료비, 위탁개발비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신규	-	소프트웨어 원가계산 도입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지원내용

-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총 70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세부지원유형>

지원유형	주요내용	
①개별형(1개사씩 지원)	①스마트화 장비(H/W) 임차비	②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개별)
②클러스터형(묶음 지원)*		②소프트웨어(S/W) 개발·사용비(공용)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20개사 이상이 공동과제를 발굴 및 수행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Q&A

Q 기존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수혜 소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23년도 수혜소공인은 협약종료 후 2년 동안 도입 기술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한 바,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22년도 이전 수혜업체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Q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도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대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IoT : '사물인터넷'을 칭하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KPI : '핵심성과지표'를 말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을 의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항목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안전조치, 에너지효율개선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 소공인 작업장 개선비용 지원
  (420만원 내·외, 국비 70%)

< 주요 지원내용 >

지원항목		주요내용
택1	안전 환경조성	(필수)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컨설팅,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불침투성 바닥,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필수)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Q&A

Q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Q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제조 매출신고액이 도소매업 신고액보다 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탄소중립 :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상담지원) 전국 77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 전국 77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 추진절차 :

피해상담 신청(연중)	→	기본상담 진행	→	전문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	→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042-363-77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개요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全주기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우대사항 : ①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우수 소상공인, ② 온라인 진출 초기 소상공인, ③ 정부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④ (기타) 정부인증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신청제외 대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품목) 수입 완제품(해외브랜드 포함), 대기업제품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역량강화)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상품개선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상품 등

록부터 홍보·판매까지 지원

- (채널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미디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O2O 플랫폼(광고비 등) 활용을 지원
-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제작·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소상공인에게 대여해주는 등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

*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지원 플랫폼 : 교육·홍보콘텐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플래그십스토어(소담상회) 안내 및 예약 등을 제공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 콘텐츠 제작, 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운영
(총 8개, 서울 3개(역삼, 상암, 당산), 경북 1개, 부산 1개, 전북 1개, 강원 1개, 광주 1개)
플래그십 스토어(소담상회) : 콘텐츠 체험과 제품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O2O 매장 운영
(서울 2개)

- 지원규모 : 8만개사(명)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1,019.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24.1월(예정)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판판대로(http://www.fanfandaero.kr)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기타 가점서류 등
- 선정평가 : 기본 자격검토 및 선정평가 진행을 통한 수혜대상

선정

* 세부사업별 선정절차 일부 상이함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제출서류 및 주요 가점사항, 사업성 등 세부사업별 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소상공인 선정	사업지원
중기부,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 전담기관	전담기관 및 전문가 평가	전담기관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281, 7284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53, 9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782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 (경로) 중소기업유통센터 : 판판대로(fanfandaero.kr) - 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24(sbiz24.kr) - 소식알림 - 공지사항
  - (인터넷 주소)
    중소기업유통센터
    - (홈페이지) 판판대로 상세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 (홈페이지) 소상공인24 상세보기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313억원, 5,600개	344억원, 6,000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신청제외 대상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선정 이후 80일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한도는 모집유형별로 상이함
- 지원규모 : 총 6,000개 내외
- 지원금액 : 344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4월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스마트기술 활용의지 및 역량, 스마트기술 이해도,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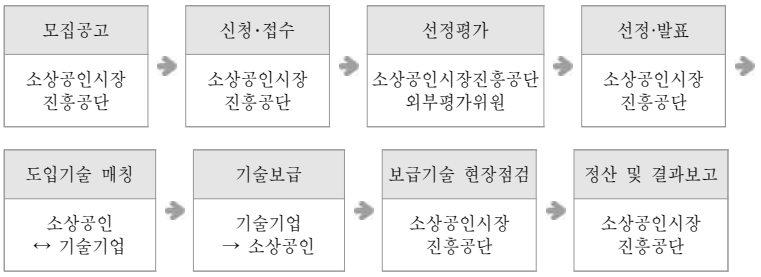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전화) 044-204-7875, 7876
  (이메일) hebegins@korea.kr, jew3471@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디지털지원실) :
  (전화) 042-363-7805, 7806
  (이메일) mskim@semas.or.kr, zwon@sema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상생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 똑똑마켓(경험형 스마트마켓) 모집공고 안내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사업개요

상인-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 추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	좌동
지원내용	(필수과제) 거버넌스 아카이빙, 전략수립 (선택과제) 크리에이터 발굴, 리빙랩 등	좌동
신청접수	(공고일) '23.2.24	(공고일) '24.1월 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골목형상점가 등 점포수 30개 이상인 예비자율상권의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로컬크리에이터, 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등)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우대사항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창업진흥원 소관) 참여기업

신청제외 대상

▸ 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 진행중인 구역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필수과제(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 선택과제(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동네상권 리빙랩 등)
- 지원규모 : 총 10개소(10억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월(예정)
- 신청방법 : 전자문서 접수(온나라시스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선정평가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대면평가(현장실사, 발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입지의 적정성,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의 협업성, 동네상권발전소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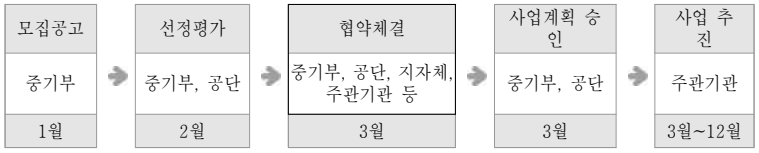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60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지원」 모집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로컬크리에이터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했던 사업으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내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startup.go.kr)

Q 사업 신청주체는 누구인가요?

A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는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초지자체(시·군·구)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 :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주관기관(로컬크리에이터 등), 공동참여기관(지자체, 상인·주민 협의체)로 조직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

제 3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희망리턴패키지

3-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경영개선 지원	지원대상 • 전년대비 20%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최근 3년간 매출 연속 감소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 전년 대비 10% 매출 감소 소상공인 • '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원스톱폐업 지원	점포철거비 • 20,000건 지원 (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점포철거비 • 22,000건 지원 (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재취업지원	-	고용부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제외
재창업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374억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❶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경영개선교육❷, 경영개선사업화❸, 원스톱폐업) 지원

  * 매출액 감소, 저신용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소재 소상공인

  ❶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하여 개선방향 도출

  ❷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❸ (경영개선사업화)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6개월, 최대 2천만원(지원금만큼 자부담)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 (원스톱폐업지원, 679억원) 사업정리 컨설팅❶, 점포철거지원❷, 법률자문❸, 채무조정❹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❶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분야 전문가를 통한 폐업컨설팅 및 재기경로 제공

  ❷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

  ❸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❹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 (재취업지원, 204억원) 재취업 교육❶,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❷, 전직장려수당❸ 지급

  ❶ (재취업교육) 온라인콘텐츠 활용한 직군별·분야별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등 기초교육과정 및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직업상담사 상담, 마인

드셋 교육 등 심화(대면)교육과정 운영

❷ (재취업특화교육) 미리 발굴한 기업 채용수요에 따라 맞춤형 특화 실무교육(중장년특화, 여성특화 등)

❸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시 60만원 지급(단, 고용부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제외)

- (재창업지원, 256억원) 업종별 재창업 교육, 일반·업종 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 재창업 사업화(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 생계형 업종 재창업 또는 현재 영위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선정평가 : 사업별 공고 참고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별 공고 참고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협약체결
중기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39(mars1@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www.semas.or.kr) : 042-363-7701~771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참고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 (경로) 희망리턴패키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통합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예산	5,000백만원	15,008백만원
지원비율	납부한 보험료의 20~50%	납부한 보험료의 50~80%
지원규모	25,000명	40,000명

지원개요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자
-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업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규모 : 40,000명
- 지원금액 : 15,008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자격여부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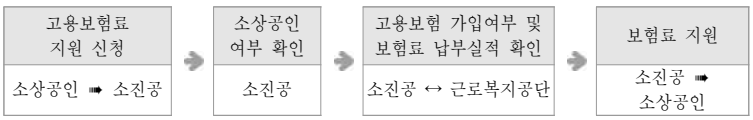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7(dckim70@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www.semas.or.kr) :

042-363-7710~771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

참고사항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②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 확인 필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사업개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공제사유 확대	• 사실상 폐업단계인 4개*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폐업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위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유 8개*로 확대 *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24.6.1 시행예정
공제금 중간정산 신설	-	• 신규 추가되는 4개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가입은 계속 유지하는 '공제금 중산정산' 신설 ※ '24.6.1 시행예정

가입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업체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제외 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주요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공제금

●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 : 3.0%, 단, 폐업·사망시 3.3%(기준이율+0.3%p), ('24.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 ’24년 6월부터 공제사유가 현행 4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신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공제금 일부지급)도 가능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9(jy1480jy@korea.kr)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홈페이지: 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02-2124-4321, kbr@kbiz.or.kr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4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일반경영안정자금
4-2 특별경영안정자금
4-3 성장기반자금

4-1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업력 무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자금통합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업력 기준 자금을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업력 무관 '모든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0.6%p	5년 (2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4.1분기 기준 : 3.89%(분기별 변동)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리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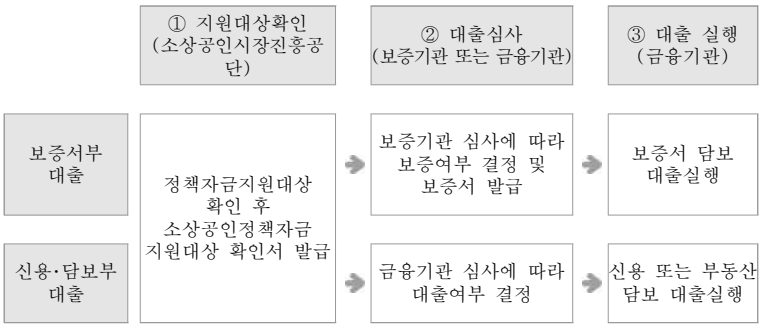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4-2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자금신설	-	대외환경 변화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자금 신설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자금 신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원	4.5%	10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24.1분기 기준 : 3.89%(분기별 변동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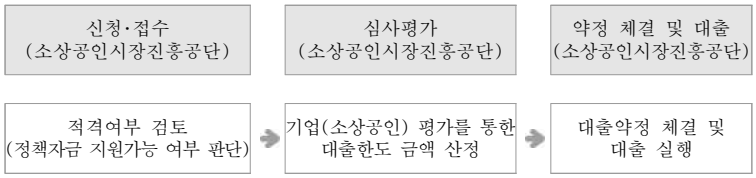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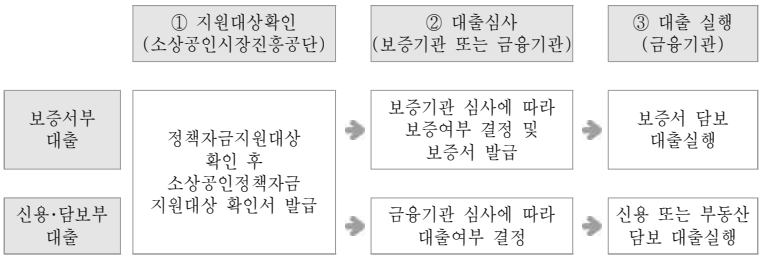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4-3

성장기반자금

사업개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한도 상향	스마트자금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업력무관 소공인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혁신성장 촉진자금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혁신형 소상공인 등	(일반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혁신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민간투자연계 형매칭융자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8년 (3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4.1분기 기준 : 3.89%(분기별 변동)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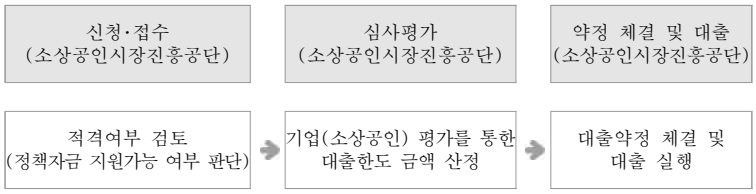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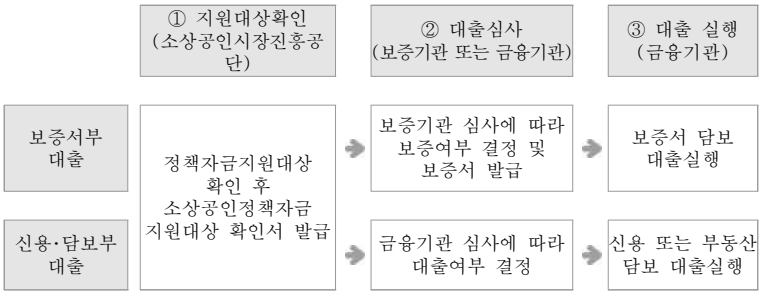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제 2 부

전통시장

제5장 ▸ 전통시장 지원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5 장

전통시장 지원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3 시장경영패키지지원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5-7 전통시장 화재공제
5-8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5-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우대사항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신청제외 대상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 선정된 후 사업포기한 지 3년 미만인 시장

지원내용

-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 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87곳 시장(629억원)
    * '23년 지원현황(670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35곳(신규건립 6곳, 계속건립 28곳), 개·보수 25곳,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17곳

신청·접수

- 접수완료('25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4.1월경 시·도 공고 예정)
  - 지자체(시·군·구),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의 후 시·도에 신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도에서 신규 선정 및 예산 편성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

고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시 ·도 공고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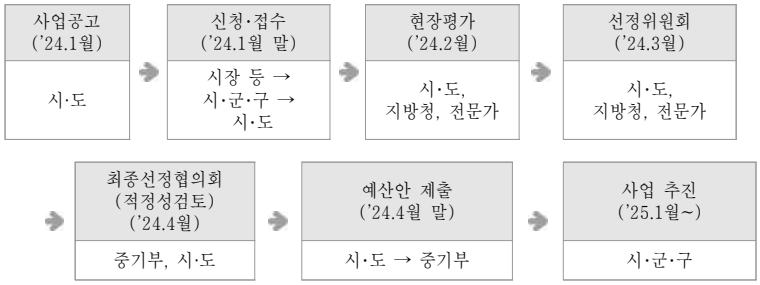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은 국가에서 최대 6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이상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60%)·지방비(30%) 외에 10%를 시장에서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개요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35% 이상인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전기안전 취약등급(D·E)인 개별점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영업점포의 20%이상 신청가능)
  - 전기안전 취약등급(D·E)인 개별점포의 경우 신청조건 없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 우대사항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공고 별 공통 우대사항

신청제외 대상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 (1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2순위)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3순위) 기타(LED전등기구, 화재예방시설 등)

●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곳 내외

● 지원금액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
(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신청·접수

● 공고 : '23년 9월

-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 선정평가
  - 현장평가(해당 점포의 노후도, 접지여부, 분전반 상태 등)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7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공융구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사업은 개별점포에 한 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별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A 단체의 성격을 가진 상인회 등에서 신청하여주시면 됩니다.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조건	선정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조건 변경 내용 기재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40%미만인 곳
- ▸'24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동일 인력 중복 불가)
- ▸상권활성화사업(舊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선정구역 내 개별시장 포함)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패키지 지원 조건>

구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36백만원 이하	9백만원 이상

-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온라인 마케팅	▸ (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 –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상인 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 지원 패키지	시장 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 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신청·접수

-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구분 / 국비 /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 36백만원 이하 / 9백만원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35,

7637~9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통통'을 검색하시고 시장경영패키지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개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 상품권으로, 전국 19.6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카드형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통합 어플리케이션
  - * 기업구매는 https://biz.e-onnurigiftcard.com에서 구매가능
- 모바일상품권 : 온누리페이, 비플페이 앱(APP)
  - * 기업구매는 http://onnuripay-b2b.com에서 구매가능

상품권구매한도

- 개인구매
  - 지류상품권 : 100만원(5%할인)
  - 카드형상품권 : 150만원(10%할인)
  - 모바일상품권 : 150만원(10%할인)

- 기업구매(구매한도없음)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카드형상품권 : 10%할인
  - 모바일상품권 : 10%할인

    * 개인·기업 할인구매는 예산소진시까지 구매가능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카드형·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 가맹점 및 온라인 사용처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 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카드형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규모

- '24년 약 5조원 발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1533-1728

- 온누리페이 고객센터(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 1670-136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51~7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7822

Q&A

Q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A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여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전용 상품권입니다.

Q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A ①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고객이 기존 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삼성페이, 카드사 앱결제 가능)

② 상품권 할인혜택과 카드사용실적 반영 가능,

③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소득공제 40% 적용

용어 설명

온라인가맹 : 온라인가맹은 ongift.or.kr으로 기존 오프라인 가맹신청(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맹신청 가능한 방법을 말함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개요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신청자격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신청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 지원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22년도 선정('23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15년 ~ '23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내용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총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첫걸음 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 등

* 지원규모 : 총 21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 디지털 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 사업 운영인력, 배송 인력 등 인적 기반과 공동 배송 시설 및 장비 임차 등 배송 인프라 구축 위한 물적 기반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판촉 프로모션

*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 오프라인 행사(동행세일 등)는 불가

** 지원규모 : 총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 9. 6.(수) ~ 10. 5.(목)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 추진절차 :

모집공고 ('23.9월 중)	신청·접수 ('23.9월~10월)	선정평가 ('23.11월)	선정 ('23.12월 중)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 (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중기부(선정심의) 및 소진공(결과발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2~5, (이메일) culture@sema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업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 디지털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 이력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장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3년도 문화관광형사업 2년차 시장입니다. '24년도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불가합니다. 2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장은 '25년에 '26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장은 '23년에 '24년도 디지털시장 사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고지원	선정		신청불가	신청불가	신청가능		
사업추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개요

●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旣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신청자격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①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② 청년몰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③ 청년몰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신청방법	(청년몰 활성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	(청년몰 활성화) 소상공인24 (www.sbiz24.kr)를 통한 접수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청년몰 활성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및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①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② 청년몰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③ 청년몰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 (청년상인도약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 상인*

* 전통시장법은 청년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만 39세에 창업할 경우 1년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우대사항(개별)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신청제외 대상

지원제외(청년몰)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지원제외(청년상인)

- ▸미성년자
- ▸'15~'22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원규모
  - (청년몰 활성화) 총 5곳 내외
  - (청년상인 도약지원) 총 200명 내외
- 지원금액
  - (청년몰 활성화) 몰 당 최대 4억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 1명 당 최대 1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청년몰 활성화) '23. 9. 6.(수) ~ 10. 5.(목)
  - (청년상인 도약지원) '24. 4~5월 중
- 신청방법
  - (청년몰 활성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청년상인 도약지원) 전문기관 통한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 선정평가 : 단계별 평가 방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 추진절차
  - (청년몰 활성화)

모집공고 ('23.9월 중)	신청·접수 ('23.9월~10월)	선정평가 ('23.11월)	선정 ('23.12월 중)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 (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중기부(선정심의) 및 소진공(결과발표)

  - (청년상인도약지원)

사업 공고 ('24.4~5월 중)	신청·접수 ('24.4월~5월)	선정평가 ('24.5월)	선정 ('24.5월 중)	사업수행 ('24.5월~)
소진공·전문기관	청년상인 (서류제출) → 전문기관(접수)	전문기관	전문기관	청년상인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6~7 (이메일) ymall@sema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A 10백만원(자부담 10%)한도 내에서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지원대상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신청제외 대상

- 전통시장 구회 외 점포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점포
-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지원내용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료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 3천만원, 동산 3천만원) 내 실손 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

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 납입방법 : 일시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위)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위)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주요구조부 / 급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1 ~ 7614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Q&A

Q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송부 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Q 화재공제 가입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입신청서와 건물구조급수를 A급으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시 상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

공제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후 사고발생시 보상 받는 금액(보험금)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개요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
  - 지역·규모·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제외 대상

- ▸상설점포 없이 노점으로만 구성 된 시장
- ▸영업점포 수가 10개 이하인 시장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535곳 내외 시장)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 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 · 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신청·접수

- 별도 신청절차 없음

대상선정	점검기관 선정	사업시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기부 (지자체 추천 시장)	공단 (분야별 점검기관 협약 체결)	점검대상별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기관)	분야별 점검 기관 → 상인회	분야별 점검기관 → 중기부, 공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2

Q&A

Q 화재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우대사항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소방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경우 우대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공고 별 공통 우대사항

신청제외 대상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6,800개 점포 내외
- 지원금액 : 점포당 80만원 한도(국비 56만원, 지방비 24만원)

신청·접수

- 공고 : '23년 9월
-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 선정평가

– 현장평가(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78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8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 공고명 :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보기

Q&A

Q 공용구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Q 점포 별 지원인데, 점포 당 지원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A 점포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되는 감지기 등의 개수는 변통됩니다.

Q 선정 후 폐업 혹은 추가 설치를 원하는 점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점포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제 3 부

보증지원 제도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6 장

보증지원 제도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6-2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6-3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6-4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6-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6-6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6-7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6-8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6-9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사업개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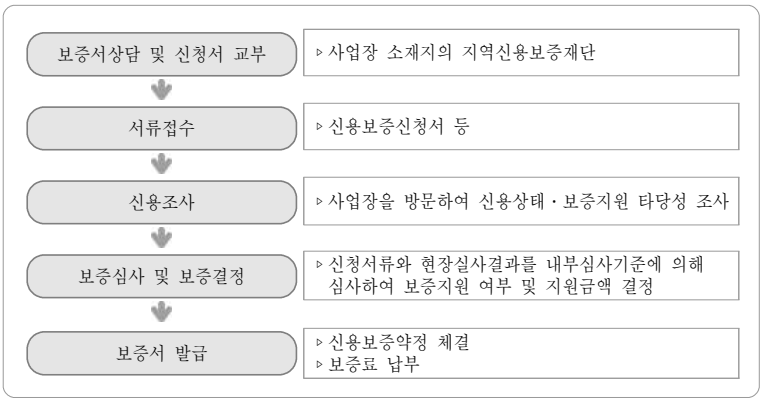

지원규모

● 2024년 보증잔액 43.7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1월
보증공급	건 수	478,419	497,304	570,247	1,102,797	1,000,959	1,207,608	942,652
	금 액	116,229	120,743	140,238	285,069	246,341	270,848	236,167
보증잔액	건 수	984,378	1,035,658	1,134,637	1,735,669	1,939,361	2,279,027	2,207,839
	금 액	191,673	204,606	230,184	394,222	430,769	465,757	446,84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일반지원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소액지원기업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2,8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단, 발생 사유가 재해일 경우 지원 가능)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 보증한도 :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장애인 확인증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table>
<tr><td>고객 제출서류</td><td>•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table><tr><td>사회적기업</td><td>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td></tr><tr><td>예비사회적기업</td><td>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td></tr><tr><td>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td><td>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분</td></tr><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td></tr><tr><td>자활기업</td><td>지자체 인증서 사본</td></tr></table></td></tr>
<tr><td>지역신보
직접수집</td><td>•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td></tr>
</table>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지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신협·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사업개요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성장의지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① 특화지원대상 소공인과 ② 일반 소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공인

1) 스마트공방 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2) 판로개척 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3) 백년소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4) 집적지구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

② 일반 소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외식업 전통시장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

② 이태원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사업장 소재지가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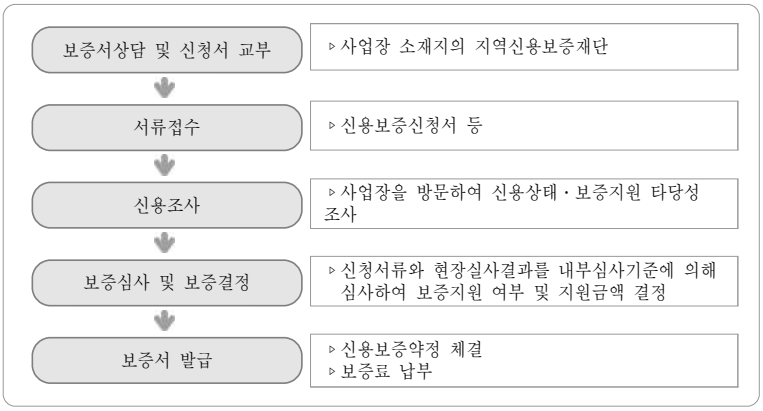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5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사업개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 • 국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현금영수증 매출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 카드 매출정보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조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사업개요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햇살론(자영업자)</th></tr>
<tr><td colspan="2">지원목표</td><td>5조원('10.7.26 ~)</td></tr>
<tr><td colspan="2">대출기관</td><td>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td></tr>
<tr><td colspan="2">보증기관</td><td>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세종제외)</td></tr>
<tr><td colspan="2">금융회사
업무위탁</td><td>▹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td></tr>
<tr><td rowspan="3">지원
대상</td><td>기본요건</td><td>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td></tr>
<tr><td>공통요건</td><td>▹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저소득자(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td></tr>
<tr><td>추가요건</td><td>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td></tr>
<tr><td colspan="2" rowspan="2">지원한도</td><td><table><tr><th>운영자금</th><th>창업자금</th><th>대환자금</th></tr><tr><td>2천만원</td><td>5천만원</td><td>3천만원</td></tr></table></td></tr>
<tr><td>*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td></tr>
</table>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용 보증재단

지원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	누계 (3개년치)
보증 공급	건수	17,081	10,992	10,723	38,796
	금액	1,803	1,237	1,254	4,294
보증 잔액	건수	92,724	75,928	59,795	228,447
	금액	5,530	4,210	3,548	13,28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제 4 편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 금융 지원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3부 ▸ 인력 지원
제4부 ▸ 판로 지원
제5부 ▸ 수출 지원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공통사항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 소상공인
제2부 ▸ 전통시장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 기타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 1

기 타

제1장 ▸ 규제애로 개선·해결
제2장 ▸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제3장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1 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1-1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권자에 그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신고·접수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44-204-7179),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 현장 간담회(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애로 건의
- 지자체별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신고·접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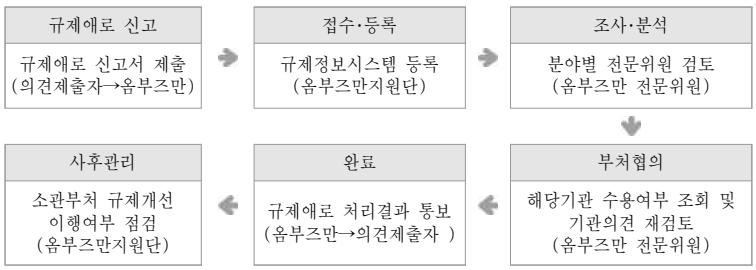

기타사항

-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접수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분야·업태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 4층
- 옴부즈만지원단 : 대표전화 044-204-7174

제 2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2-1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전문가가 기업의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종 경영애로를 현장에서 접수·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기술 및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구 분	상담위원	클리닉위원
변호사	21	26
변리사	15	42
회계사	7	12
관세사	16	41
세무사	24	62
법무사	4	5
노무사	37	386
명장 기능장	2	14
기술사	22	52
기술지도사	29	62
경영지도사	201	699
공공기관 경력자	31	34
기타	50	261
계	459	1,696

● 전문가 상담이란?

– 지방청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전문상담으로 해결 지원

● 현장 클리닉이란?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단기간(통상 3일, 최대 14일)에 해결 지원

지원대상

● 전문가 상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무료)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1일 7만원)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지방청에 문의 바람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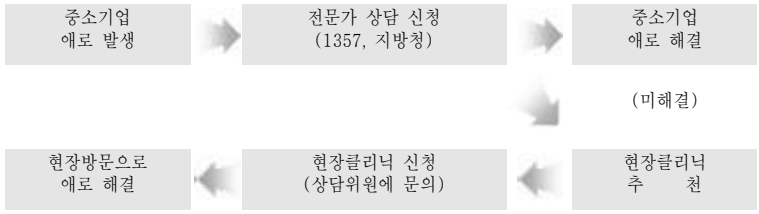

상담신청

● 전 화 : 국번없이 1357, 지방청 상담번호 (문의처 참조)

● 인터넷 : http//www.smes.go.kr/bizlink

● 방 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제출서류

- (전문가 상담) 없음, (현장클리닉) 사업자등록증

  * '22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8.8만 건, (현장클리닉) 2,955개 업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4-204-737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표 참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 화	주 소
서울	02-2110-6351~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2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2층
광주·전남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41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인천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041-564-3862 041-415-0623 041-539-459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충북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210-643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 3 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3-1 거래 공정화
3-2 성과공유제
3-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3-4 상생누리 플랫폼

거래 공정화

사업개요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신고접수 및 분쟁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가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내용

-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 제시

* 협력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 소송비용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불성립 및 중단되어 민사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의 50%, 최대 8백만원)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가능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신청·접수

-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유 선 : 대표번호 1357+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med@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유 선 : 02-368-8949 / 이메일 : med@win-win.or.kr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18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02-368-8463	벤처기업협회	02-6331-7002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NNOBIZ)	031-628-9625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32-680-390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9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1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광주·전남지방	062-360-9158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46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3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6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1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031-431-762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0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	053-756-6681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협동조합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2-6956-9952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2-3431-3001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2-2239-07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2-2038-2558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성과공유제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 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과제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과공유 과제로 불인정 * 공동목표, 성과공유, 공동노력	'성과공유 샌드박스' 절차 도입 * 수위탁거래 외에 유통분야, 온라인플랫폼 기업간 거래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성과공유로 인정
성과공유 인정방식	현금, 물량매출	현금 이외 IP, 데이터 등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은 모두 인정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내용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 물량매출 이외 IP, 데이터 등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은 모두 인정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등록과제) 신청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갖춘 과제임을 승인 받은 과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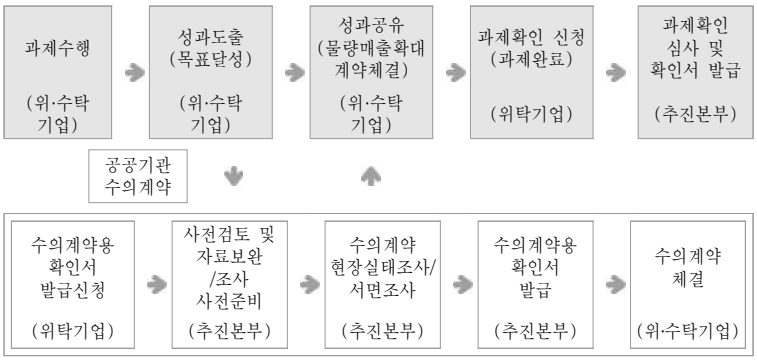

* (확인과제)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확인받은 과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93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winwinnuri.or.k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사업매칭 게시판)>

구분	'23년	'24년
배경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간 사업 매칭 게시판을 통해 양방향의 지식과 정보 교류	
의의	중소기업이 역량 교류를 원하는 사업, 아이디어, 아이템 등을 게시	
매칭대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운영방식	중소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에게 매칭 희망 사업 등 게시	중소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매칭 희망 사업 등 게시

지원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 단, 프로그램 운영은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협력사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계열사 오픈 :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부분 오픈 : 기존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

이용절차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를 통해 신청 및 참여

단계별 세부사항

▸회원가입
*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 필요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선정결과 확인
*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하고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 중 신청 및 참여이력을 통해 선정 결과 확인
▸프로그램 참여
*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지원규모

- 제한없음
  * '23년 지원현황 : 304개 대기업·공공기관 17,718개 프로그램 등록운영(11월 말 기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Q&A

Q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업 회원가입 시 주거래기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예비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한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사업개요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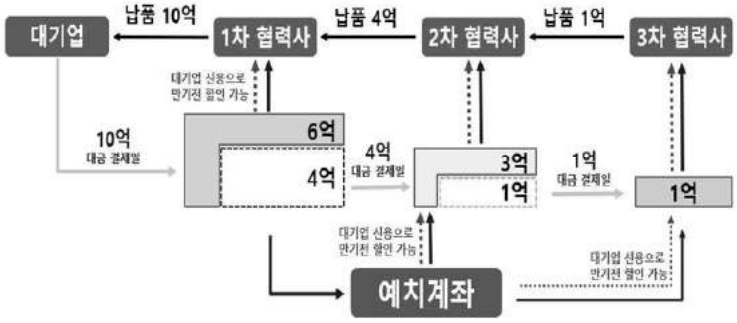

제도장점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은행, 현대커머셜 총 11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3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고사항

-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21.10.19)

제 2 부

도움이 되는 제도

제4장 ▸ 알아두면 좋은 제도
부 록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제 4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4-1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4-2 이노비즈 확인제도
4-3 메인비즈 확인제도
4-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4-5 기술자료 임치제도
4-6 벤처기업 확인제도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선정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및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제외 업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혜택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선정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선정기준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처

  -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3층)
  -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층)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현황 : '17년부터 '22년까지 총 37개사 선정(중소 29개사, 중견 8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문의처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6, 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02-3275-3093, 2106)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044-204-7443, 7448)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 www.time-honored.or.kr

이노비즈 확인제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

심사·평가내용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

* R&D 활동, 혁신 기술 개발·생산화 능력,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등

선정절차

온라인신청 및 자가진단 (연중)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 후 기업등록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평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통과 *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 1544-1120
⇩	
확인서 발급	• 이노비즈넷 접속 후 확인서 발급 화면을 통해 온라인 발급신청
⇩	
종합연계지원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단, 예외지역 존재 등으로 지자체 세무과 상담 필수
	정기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 관세조사 1년간 유예 ※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M&A	• 이노비즈 기업 합병 및 지분취득 시 법인세 10% 공제 • M&A 절차 간소화 특례 : 벤처기업에게 적용하는 합병절차 특례를 이노비즈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세금포인트	•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적립 우대	납부세금 (기존) 10만원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이노비즈 채움금융(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신한은행) : 대출금리 0.2% 우대 • 스마트공장 혁신지원(신한은행) : 대출금리 0.3% 우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 : 최대 0.4% 감면 ※ 단, 타 감면사유와 중복적용 불가/최초 신규보증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적용 • 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최대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 할인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최고 30억)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최대 30억)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 자기자본(30억 → 15억), 최근 당기순이익(20억 → 10억), 자기자본이익률(100분의10 → 100분의 5) 등
정책	R&D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 등 가점 및 참여조건 우대
	판로 및 수출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사업 신청자격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2.0점, 제조업 2.5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1.5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최대 70% 할인)
	인력 및 기타	• 산업기능요원(제조/생산분야 가점 4점) •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가점 5점)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기술전문가 활용(가점 1점)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분야 지원자격 우대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메인비즈 확인제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항에 해당하는 업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신청·접수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

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 평가지표

-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평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제출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정보, 주생산품, 서비스품목, 재무사항 등 입력
- 3년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계획서 등 현장평가 시 제출

선정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	
현장·경영평가	• 경영혁신인프라·활동·성과 부문의 현장평가에서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통과 *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의 전문평가자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문의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	
확인서 발급	• 메인비즈넷 접속 후 메인비즈 인증 확인서 발급 화면을 통해 확인서 발급신청 가능
↓	
종합연계 지원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세제	정기세무 조사유예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 단, 탈루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관세조사 유예	•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단, 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기업은 제외
	세금 포인트 적립우대	•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기존)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 •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시 담보 면제에 세금포인트 사용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할인 • NH농협 : 기업 대출시 금리우대 최대 1.65%p 차감 • 한국은행 : 혁신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역본부별 상이 • 신한금융투자 : 기업공개(IPO) 및 코넥스 상장 컨설팅, 자금조달 컨설팅, M&A 자문 및 인수금융 자금 지원, 부동산 PF 자문 및 금융 자문 등
정책	R&D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사업, 산학연cllabo R&D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가점
	판로·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2점, 제조업2.5점) • 조달청 나라장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우대(신인도평가1.5점) •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바우처 메인비즈 기업 가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TV,라디오 70% 할인)
	인력 및 기타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우대 • 병역특례지원 가산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 (상시 적립가능)

신청·접수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을 통해 마일리지 상시적립 및 사용 가능

적립방법

-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총점 = 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 교육인원 × 교육시간

-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총점 = 혁신활동(심의 결과에 따라 0, 300, 500점) + 혁신성과(100~140점)

-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14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서 제출 기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처리절차

●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교육과정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 (마일리지넷 참조)
↓	
교육이수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	
마일리지 적립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교육기관에서 적립절차 진행)
↓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활동마일리지 적립

혁신활동계획서 등록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등록
↓	
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해당결과 제출
↓	
혁신활동 승인	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활용처

-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보증	신용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기술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수출	수출컨소시엄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판로	정책매장 운영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인력	산업기능요원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77
- 마일리지 공식홈페이지 : 경영혁신마일리지넷 (www.mileag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지원대상

-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 부여

수수료

- 신규(최초계약) 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자료추가 5만원/건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 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신청·접수

-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개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처리절차

신청·접수	임치물 확인 및 접수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임치계약 관리	임치물 교부
(상시)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내)	(필요 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051-606-7429, ts.kibo.or.kr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정의

- 일반적으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유형	확 인 요 건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투자금 10%(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별도 기준

벤처기업 제한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확인절차

-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 (연중)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접속 후 신청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현장 실제조사	• 확인유형별·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이 현장 조사 실시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요건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	
심의·의결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확인기관(온라인 발급)
⇩	
종합연계지원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혜택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6②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58의3②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2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 · 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58②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5②5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기초연구법

분류	내 용	법적근거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시행령 §16의2①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①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주식의 30% 이상 인수)의 임직원,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법 §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kobaco 규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5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교육 서비스업		P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회원가입
고그인(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회원가입)
자료제출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원칙)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등은 지방중기청으로 해당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중소기업 확인"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
신청기업 및 신청자 정보 입력
확인서 발급완료
제출서류 등을 기초로 중소기업 여부 자동판정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출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소속	연락처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0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04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4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11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51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반달공원 옆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24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2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06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3층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11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5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76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12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효자동 2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26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년월 : 2024년 1월
발 행 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 화 : (044) 204-7477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